

종합감사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2년 봉화군 경상북도종합감사 —

2022. 11.



< 재심의 결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 1. 일람표

(단위 : 천 원)

번호	소관	건명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시정	주의	회수	금액	감액	금액	추징	금액	
계			16건	12	4	0	0	4	368,129	1	46,778
1	■ ■ 과	승진임용 범위(배수) 밖의 자를 승진임용		1							
2	■ ■ 과	보건소장 임용 및 정원 관리 부적정		1							
3	□ □ □ □ 과	의료급여사업 추진 부적정	1				1	3,043 (환급)			
4	□ □ □ □ 과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도·감독 소홀	1				1	7,192 (지급)			
5	■ ■ ■ ■ ■ ■ ■ ■ ■ ■ 사무소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 조치 소홀	1								
6	○ ○ 과 ▣ ▣ ▣ ▣ 과 ⊖ ⊖ ⊖ ⊖ 과	용역 계약 분할 발주 부적정		1							
7	▨ ▨ ▨ ▨ 실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 등 부적정	1							1	46,778
8	▬ ▬ ▬ ▬ ▬ ▬ ▬ ▬ ▬ ▬ 과 ▲ ▲ ▲ ▲ ▲ ▲ ▲ ▲ 과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부적정	1								
9	▽ ▽ ▽ ▽ ▽ ▽ ▽ ▽ 과	봉화군 캠핑장 위탁운영 부적정	1								
10	● ● 면 ■ ■ 면 ▣ ▣ 면 ⊖ ⊖ 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1							
11	⊖ ⊖ ⊖ ⊖ 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업무 소홀	1								
12	■ ■ ■ ■ ■ ■ ■ ■ 단 외 5개 부서	건설공사 구간 내 편입 국·공유지 무단 훼손 사용	1 (기관 경고)								
13	■ ■ ■ ■ ■ ■ ■ ■ 단	● ● ● 경관전망 인도교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1								
14	▲ ▲ ▲ ▲ ▲ ▲ ▲ ▲ 과 ▲ ▲ 과	◎ ◎ ◎ ◎ ◎ ◎ 공영주차타워 사후관리 부적정	1								
15	◆ ◆ ◆ ◆ 과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1				1	195,246			
16	⊖ ⊖ ⊖ ⊖ 과	★★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1				1	162,648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승진임용 범위(배수) 밖의 자를 승진임용  
소 관 청        봉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봉화군 ■■■과에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승진임용 등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30조, 제33조, 제33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직공무원의 6급·7급·8급·9급의 정원을 통합·운영할 수 있고,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하고 7급 1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6급 공무원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현행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VI. 2. 바. 6급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절차와 방법에 따르면 근속승진 대상자는 근속승진인원에 해당하는 수에 대하여 임용령 [별표4]<sup>1)</sup>에서 정한 승진후보자 명부 배수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속승진임용 배수범위는 단위연도별 “근속승진 가능인원”을 결원수로 간주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1) 임용하려는 결원 수 : 1명(결원 1명당 7배수), 2명(결원 1명당 5배수), 3~5명(결원 1명당 4배수), “이하생략”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임용시험·승진·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승진후보자 명부의 승진임용 범위(배수) 밖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근속승진 가능한 것으로 인사위원회 심의자료를 작성·제출하여 해당 공무원을 근속승진 대상자로 결정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20. 7. 23. <<6급 근속승진 대상자 사전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음 <<7급 ♣♣♣은 승진후보자명부 18위로 승진 임용 범위(7배수) 밖에 있어 승진심사 대상조차 될 수 없었는데도 근속승진 가능한 것으로 인사위원회 심의자료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을 6급 근속승진 대상자로 결정하는 등 아래 [표]와 같이 2020. 7. 23.부터 2021. 7. 8.까지 근속승진 대상자 사전심의를 위한 2회에 걸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승진임용 범위(배수) 밖에 있는 공무원 2명을 근속승진 가능한 것으로 인사위원회 심의자료를 작성·제출하여 근속승진 대상자로 결정하였다.

[표] 승진임용 범위(배수) 밖의 자 근속승진 현황

인사위원회 심 의 일	근속승진 인사요인			실제 근속승진자 현황				비고
	승진직급	결원수	배수범위	소속	직급	성명	명부순위	
'20.07.23.	<<6급	1	7	◀◀음	<<7급	♣♣♣	18	배수 밖
'21.07.08.	<<6급	1	7	▷▷면	<<7급	♡♡♡	13	배수 밖

그 결과 승진임용 범위(배수) 밖에 있어 승진할 수 없었던 <<7급 ♣♣♣, ♡♡♡에게 <<6급으로 승진하는 특혜를 주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봉화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보건소장 임용 및 정원관리 부적정  
소 관 청 봉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봉화군 ■■과에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승진임용 등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1. 보건소장 임용 부적정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하고,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1]에 따른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이하 ‘보건 등 직렬’이라 한다)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봉화군보건소 소장은 지방◀◀◀◀◀으로 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봉화군보건소장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면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여야 하고,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1]에 따른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을 임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보건 등 직렬에 임용대상자가 없고, 코로나19로 자리

를 비워둘 수 없다는 이유로 아래 [표]와 같이 2020. 7. 1.부터 2022. 9. 30. 감사 일 현재까지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없는 지방서기관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한 사실이 있다.

[표] 보건소장 임용현황

직 위	직 급	성명	근무기간	비 고
보건소장	지방서기관	☒☒☒	2020.7.1.~2020.12.31.	퇴 직
"	지방서기관	△△△	2021.1.1.~2021.12.31.	공로연수
"	지방서기관	◎◎◎	2022.1.1.~ 현재	

## 2. 정원관리 부적정

봉화군에서는 2020. 7. 1. 조직개편을 통해 보건소장으로 임용가능한 직급·직렬을 당초 지방기술서기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에서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변경하고, 보건소에 보건정책과와 건강관리과를 신설하였다.

이와 연계하여 2020. 4. 29. 인사위원회를 통해 지방●●●●●● ☒☒☒를 지방◇◇◇으로 승진 의결하고 2020. 7. 1. 보건소장으로 임용하였고, 2020. 6. 18. 인사위원회를 통해 지방●●●●● ●●●과 지방♡♡♡♡♡♡ ●●●을 사무관으로 승진 의결하고 2022. 7. 25. 각각 ★★★★★과장과 ○○○○과장으로 임용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직렬별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여야 하며,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020. 7. 1. 개정·시행된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2조 관련

[별표1]에 따르면 봉화군에 둘 수 있는 사무관 이상(군수·부군수 제외, 지도관 포함) 직위는 35명으로 되어 있다.(임용대상자가 없어 공석으로 유지되어야 할 보건소장 직위를 고려한다면 실제로는 34명임)

따라서 봉화군에서 운용할 수 있는 사무관 이상 직위는 최대 34명을 초과할 수 없고, 해당 직급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승진임용하여야 하며, 공석으로 유지되어야 할 보건소장 직위에 임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임용하고 그 임용된 자의 당초 직위의 공석을 승진요인으로 책정하여 승진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20. 6. 18. 사무관 승진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 하면서 2020. 4. 29. 인사위원회를 통해 이미 2020. 7. 1.자 승진임용 대상자를 의결<sup>2)</sup> 하여 임용 가능한 사무관 이상 직위 34명 중 33명을 충원하여 사무관 이상 결원은 1명뿐이었는데도 지방●●●● ●●●과 지방♡♡♡♡♡♡ ●●●, 총 2명을 사무관으로 승진 의결하고 2022. 7. 25. 각각 ★★★★★과장과 ○○○○과장으로 임용하였다.

그 결과 정원 초과로 승진할 수 없었던 6급 1명에게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특혜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2020. 7. 25.부터 2020. 12. 31.까지 6개월간 사무관 이상 정원을 초과(1명)하여 인사 운용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봉화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2) 서기관 승진 2명(○○○, ☒☒☒), 사무관 승진 7명(△△△, ⑦⑦⑦, ○○○, □□□, ○○○, ●●●, ●●●)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의료급여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봉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봉화군 □□□□과에서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통해 의료급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1.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상실 관리 소홀

「의료급여법」 제16조, 제17조에 따르면 수급자의 소득·재산상황·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고, 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의료급여법」 제3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의료급여사업 안내(보건복지부)」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 소득·재산 증가 등의 사유로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의료급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상실 통보서를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통보하게 되어 있다.

아울러 「의료급여사업 안내」에 따라 수급권자의 취득, 변경, 상실 등의 변경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지연 통보 시 의료급여·건강보험 간 정산, 급여비용 착오 지급, 수급권 자격 확인 업무 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취득·변경·상실 사유 발생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에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취득, 변경,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종별 변경 대상자에게 새로운 의료급여증을 발급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19년 8월부터 2022. 9. 19. 감사일 현재까지 [표 1] 과 같이 241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 초과 등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담당자의 전산 처리 지연으로 제때 처리되지 않아 최대 500일까지 자격상실 처리가 지연되는 등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1] 의료급여 자격상실 처리 지연 현황

연도	의료급여 수급권 지연처리 인원	지연 일수	지연 사유	비 고
계	241명			
2019(8월부터)	●●● 외 40명	최대 178일	담당자 전산처리 지연	소득인정액 초과, 연령 초과 등
2020년	◆◆◆ 외 74명	최대 500일	담당자 전산처리 지연	
2021년	⊙⊙⊙ 외 63명	최대 476일	담당자 전산처리 지연	
2022년	▽▽▽ 외 60명	최대 203일	담당자 전산처리 지연	

※ 봉화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표 2]와 같이 소득인정액 초과, 취업 등 의료급여 자격 중지(상실)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 등 16명의 의료급여 상실 처리가 지연되는 기간 동안 106회에 이르는 의료급여 진료가 이루어져 4,082천 원의 진료비용을 의료급여로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의료급여 자격상실 지연처리로 인한 의료급여 기금 부담액 등 현황

(단위 : 원)

연번	성명	생년월일	보호 종별	자격상실 사유 발생일	실제 처리 일자	처 리 지연일	진료 횟수	기관부담액 (의료급여기금)
계	16명						106회	4,082,360
1	◎◎◎	□□□□.□□.□□	1종	2019.12.11.	2019.12.26.	15일	1회	50,020
2	◆◆◆	○○○○.○○.○○	1종	2020.02.12.	2020.08.31.	201일	3회	108,590
3	△△△	◇◇◇◇.◇◇.◇◇	2종	2020.02.27.	2020.03.11.	13일	3회	54,480
4	○○○	△△△△.△△.△△	2종	2020.03.17.	2020.06.10.	85일	4회	115,230
5	●●●	▽▽▽▽.▽▽.▽▽	1종	2020.04.09.	2020.06.20.	72일	1회	457,420
6	●●●	◁◁◁◁.◁◁.◁◁	2종	2020.05.03.	2020.06.16.	44일	3회	179,240

연번	성명	생년월일	보호 종별	자격상실 사유 발생일	실제 처리 일자	처 리 지연일	진료 횟수	기관부담액 (의료급여기금)
7	●●●	▷▷▷▷.▷▷.▷▷.	2종	2020.05.20.	2020.06.10.	21일	3회	60,350
8	◎◎◎	■ ■ ■ ■ ■ ■ ■ ■ ■ ■	2종	2020.05.28.	2020.07.09.	42일	4회	40,750
9	★★★	●●●●●●●●●●	1종	2021.01.30.	2021.02.08.	9일	2회	33,890
10	◇◇◇	◆◆◆◆◆◆◆◆◆◆	1종	2022.01.15.	2022.03.17.	61일	4회	81,670
11	♡♡♡	▲▲▲▲▲▲▲▲▲▲	1종	2022.02.18.	2022.03.15.	25일	2회	162,970
12	□□□	▼▼▼▼.▼▼.▼▼.	1종	2022.03.01.	2022.05.19.	79일	5회	87,150
13	■ ■ ■	◀◀◀◀◀◀◀◀◀◀	1종	2022.03.01.	2022.05.19.	79일	8회	301,800
14	△△△	▶▶▶▶▶▶▶▶▶▶	1종	2022.03.08.	2022.08.10.	155일	60회	2,289,050
15	▲▲▲	⊗⊗⊗⊗⊗⊗⊗⊗⊗	2종	2022.07.05.	2022.08.10.	36일	2회	27,010
16	◁◁◁	⊗⊗⊗⊗⊗⊗⊗⊗⊗	1종	2022.07.30.	2022.08.04.	5일	1회	32,740

※ 봉화군 제출자료 재구성

## 2. 의료급여 수급자 종별 변경 소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제1종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18세 미만인 자, 65세 이상인 자 등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원의 구성원으로 명시하고 있고 「의료급여사업 안내(보건복지부)」에 ‘국민기초 1종 수급권자 자격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인 자는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1종 자격이 부여된다고 되어 있으며 「의료급여사업 안내(보건복지부)」에 ‘의료급여증 발급’에 따르면 1종에서 2종 또는 2종에서 1종으로 수급자 자격이 변동된 경우 기존 의료급여증을 지체 없이 회수하고 변경된 내용에 맞게 새로운 의료급여증을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관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과에서는 [표 3]과 같이 의료급여 2종 수급자 ◆◆◆ 등 9명이 65세 연령도래로 의료급여 종별을 2종에서 1종으로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처리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 기준으로 최대 215일 지연하였고 그에 따라 환급금액 1,615,370원이 발생하였다.

[표 3] 의료급여 연령도래자 종별변경 미처리 현황

(단위 : 원)

대 상 자				종 별 변 경			환 금 발생금액
성명	생년월일	선정일자	선정시 종별	적정 종별	사유	실제처리 일 자	
계	9명						1,615,370
◆◆◆	◆◆◆◆.◆◆.◆◆	2004.11.23.	2종	1종	연령도래	미처리	140,760
□□□	◆◆◆◆.◆◆.◆◆	2008.03.13.	2종	1종	연령도래	미처리	611,000
□□□□	◆◆◆◆.◆◆.◆◆	2018.07.04.	2종	1종	연령도래	미처리	722,370
□□□	◆◆◆◆.◆◆.◆◆	2016.06.01.	2종	1종	연령도래	미처리	52,000
◆◆◆	◆◆◆◆.◆◆.◆◆	2008.09.10.	2종	1종	연령도래	미처리	750
◆◆◆	□□□□.□□.□□	2000.10.01.	2종	1종	연령도래	미처리	41,500
◆◆◆	□□□□.□□.□□	2013.02.21.	2종	1종	연령도래	미처리	23,740
◆◆◆	◆◆◆◆.◆◆.◆◆	2018.03.28.	2종	1종	연령도래	미처리	3,000
◆◆◆	◆◆◆◆.◆◆.◆◆	2010.08.12.	2종	1종	연령도래	미처리	20,250

※ 봉화군 제출자료 재구성

### 3.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환급 처리 부적정

「의료급여사업 안내」에 따라 시·군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 가입자로 처리한 경우(자격소급 취득 등 행정 착오) 분기별로 해당 대상자의 본인부담진료비 정산자료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아 본인부담금을 수급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또한 환급을 위해서는 시·군에서 의료급여 수급 자격변동 등 환급사유가 발생한 대상자에게 환급예정 통지 및 환급신청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후 신청안내 통지를 받은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진료비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 본인부담금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하고, 시·군에서는 지급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 유형별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환급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의료급여법」 제31조, 「의료급여사업 안내」에 따라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날(본인부담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따라서 □□□□과에서는 의료급여 수급 자격변동 등으로 본인부담금 환급

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환급신청을 반드시 안내하여야 하고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산정하여 환급처리를 이행하여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표 4]와 같이 2017년부터 2022. 9. 19. 감사일 현재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실제 자격은 의료급여 수급자이나 진료 당시 건강보험 가입자로 처리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명단과 환급안내문을 공문으로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표 5]와 같이 환급대상 160건 2,603천 원에 대해 환급신청 안내 및 환급이행을 하지 않았다.

[표 4]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진료비 정산자료 통보 현황

연 도	건보공단 통보일	공문번호	접수일(확인일)	비 고
2017년	2017.02.02.	●●●●팀-240	2017.02.08.	
	2017.05.08.	●●●●팀-859	2017.05.15.	
	2017.08.01.	●●●●팀-1397	2017.08.01.	
	2017.10.27.	●●●●팀-1836	2017.11.08.	
2018년	2018.01.30.	●●●●팀-190	2018.02.22.	
	2018.05.08.	●●●●팀-763	2018.05.17.	
	2018.08.07.	●●●●팀-1309	2018.08.22.	
	2018.11.14.	●●●●팀-1931	2018.11.16.	
2019년	2019.03.12.	●●●●팀-449	2019.03.20.	
	2019.05.07.	●●●●팀-771	2019.05.22.	
	2019.08.06.	●●●●팀-1271	2019.08.20.	
	2019.11.08.	●●●●팀-1751	2019.11.15.	
2020년	2020.02.06.	●●●●팀-231	2020.02.17.	
	2020.05.11.	●●●●팀-784	2020.05.20.	
	2020.08.03.	●●●●팀-1348	2020.08.19.	
	2020.11.09.	●●●●팀-1862	2020.11.09.	
2021년	2021.02.03.	●●●●팀-232	2021.02.15.	
	2021.05.03.	●●●●팀-806	2021.05.13.	
	2021.08.11.	●●●●팀-1413	2021.08.17.	
	2021.12.07.	●●●●팀-2121	2021.12.07.	
2022년	2022.02.10.	●●●●팀-268	2022.02.15.	
	2022.05.04.	●●●●부-879	2022.05.09.	

※ 봉화군 제출자료 재구성

[표 5] 정산진료비 본인부담금 환급신청 안내 및 환급 현황

(단위 : 건, 원)

연도	환급대상		환급안내	환급신청	환급결과		비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계	160	2,603,760			-	-	
소계	77	1,176,100			-	-	
2017년	45	757,150	미실시	×	-	-	청구 소멸시효 경과
2018년	32	418,950	미실시	×	-	-	
소계	83	1,427,660			-	-	
2019년	46	847,050	미실시	×	-	-	
2020년	13	338,830	미실시	×	-	-	
2021년	22	222,270	미실시	×	-	-	
2022년	2	19,510	미실시	×	-	-	

※ 봉화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중 특히 77건 1,176천 원 정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청구 소멸시효(3년)가 이미 경과되어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여 금전적 손실을 입는 등 본인부담금 환급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봉화군수는**

- ①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 가입자로 처리하여 발생한 본인부담금 1,427,660원 상당액을 해당 대상자가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및 환급 조치하시고, 의료급여 중별 변경 미처리에 따라 발생한 환급금 1,615,370원을 해당 대상자에게 환급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②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급여법」 제16조, 제17조, 「의료급여사업 안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의료급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도·감독 소홀  
소 관 청 봉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봉화군 □□□□과에서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노인복지법」 제42조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 1. 시설수급자 특별위로금 집행 부적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조, 제15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사회복지시설 회계는 그 설립 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에 개선을 명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장시설이 수급자에

대하여 시설 생활에 필요한 주식비, 부식비, 취사용 연료비, 의류·신발비, 특별위로금 등을 시·군 담당부서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특별위로금은 급여생성 마감 전일까지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설·추석 전월에 50,000원을 연 2회 지급(2019년 36,300원, 2020년 37,300원, 2021년~2022년 50,000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반드시 보장시설 수급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노인복지시설에 일괄 지원된 생계급여 중 명절 특별위로금이 보장시설 수급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고 있는지 회계관리 등의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표 1]과 같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노인복지시설 1개소에서 시설수급자 개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명절 특별위로금 7,192천 원을 개별 지급하지 않고 시설 부식비로 지출하고 있는데도 개선명령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표 1] 시설수급자 특별위로금 미지급 현황

(단위 : 원)

시설유형	시설명	수급자 수	특별위로금 미지급 금액					비고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노인 복지시설	■■■■■ 요양원	21명	7,192,200	1,488,300	1,603,900	2,100,000	2,000,000	

※ 봉화군 제출자료 재구성

## 2. 회계담당자 재정 보증보험 가입 소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와 제22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소규모 시설의 경우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회계법」 제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르면 회계관계 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으며 이때 회계 관직·책임 범위 등을 고려하여 1천만 원 이상의 재정보증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수입원 또는 지출원 등 회계 담당자를 임명할 때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재산상의 손해를 대비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표 2]와 같이 감사일인 2022. 9. 19. 현재까지 ●●●●●복지센터 등 4개 시설의 회계 업무 담당자가 재정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보조금 집행관리 등의 회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조치하지 않는 등 복지시설 회계 담당자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2] 노인의료복지시설 회계담당자 보증보험 미가입 현황

연번	시설명	대표자	연도별 가입현황				비고
			2019	2020	2021	2022	
계	4개소						
1	●●●●●복지센터	◆◆◆	미가입	2020.03.18.	2021.03.18.	2022.03.18.	
2	■●●●●요양원	◆◆◆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2022.08.09.	지연가입
3	◆◆◆◆◆요양원	□□□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4	◆◆◆◆◆요양원	□□□	2019.05.01.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 봉화군 제출자료 재구성

### 3. 예산·결산(후원금 사용 및 결과보고) 보고 지도·감독 소홀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과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 이라 한다)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그 밖에 후원금 관리 및 공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이하 “재무·회계규칙”이라 한다)을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

「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르고, 같은 규칙 제10조, 제19조, 제20조에 따라 시설 예산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관할 군수에게 제출(정보시스템을 활용 포함)하여야 하고,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보고서에는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후원금을 사용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그 밖에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된 때에는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등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51조 및 「재무·회계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군수는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 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노인복지시설에서 편성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보고하고,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결산서 등의 보고서류를 제대로 제출하는지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여 시설의 재무·회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노인복지시설의 예산서, 결산서 등의 보고 내역을 확인한 결과 위 부서에서는 [표 3]과 같이 2개소가 2019년도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14개소는 결산보고서는 제출하였으나,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지 않은 채 제출하였음에도(2019년 6개소, 2020년

4개소, 2021년 4개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지 않는 등 노인복지시설 지도·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예산 및 후원금 등이 투명하게 관리·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3] 노인복지시설 예산 및 결산 등 보고 현황

(단위 : 개소 수)

구 분	개소수	예산 보고서		결산 보고서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		비고
		제출	미제출	제출	미제출	제출	미제출	
2019년	11	11	-	9	2	5	6	
2020년	9	9	-	9	-	5	4	
2021년	11	11	-	11	-	7	4	
2022년	11	11	-					

※ 봉화군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봉화군수는

- ① 미지급한 시설수급자 특별위로금 7,192,200원을 개인별로 지급하시고, 미지급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시기 바라며,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회계담당자를 임명할 때에는 재정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시고,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② 앞으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행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조치 소홀  
소 관 청 봉화군  
관 계 부 서 □□□□□□□□□□사무소  
내 용

봉화군 □□□□□□□□□□사무소에서는 □□□□□□□□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sup>3)</sup>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 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및 그 해설서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를 위해 운영·관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글, 첨부파일 등에 개인정보 포함 금지, 정기적 점검 및 삭제 등의 조치’ 등과 같은 보안대책 및 기술 적용에 따른 적정성을 검증하고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함





[별첨] 봉화군 □□□□□□□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노출 목록

연번	계시일	제목	작성자	주소	휴대폰번호
1	2011.8.8.	★★ 안내 책자 신청합니다.	□□□	○○○ ◆◆◆구 □□1동 ○○주택 ○동 ■■■호 (○○○-○○○)	
2	2011.8.22.	안내책자	◆◆◆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	
3	2011.10.11.	□□□□□□□□□□안내책자랑 봉화□□책자신청합니다.	♣♣♣	♥♥ ♣♣시 ♥♥면 ♣♣리 ♣♣♣♣♣아파트 ◆◆◆동 □□□호	
4	2011.10.15.	□□□ ★★ 안내 책자 좀 부탁드립니다.	◇◇◇	○○○-○○○ □□도 ◆◆◆시 ♣♣♣ ♣♣♣리 ♥♥♥♥♥번지 ♣♣♣아파트 ○○○동 ▷▷▷호	
5	2012.5.1.	★★ 안내책자 부탁 드립니다. ^^	■ ■ ■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	
6	2012.5.31.	안내책자 받아보고 싶습니다.	○ ○ ○	▯▯▯시 ▯▯▯군 ▯▯▯읍 ▯▯▯리 ▷▷▷빌 ♥♥♥동 ♥♥♥호	
7	2012.9.29.	□□□ □□ 안내책자 부탁드립니다.	◆◆◆		◆◆◆-◆◆◆-◆◆◆ ◆◆◆
8	2012.11.16.	□□□ 안내책자 부탁드립니다	◆◆◆	♥♥도 ♥♥시 □□□구 ▯▯▯3동 ▯▯▯▯▯APT ▯▯▯동 ▯▯▯호 (우.○○○-○○○)	
9	2013.6.27.	안내책자신청합니다.	□□□	♥♥ ▷▷시 ▷▷1동 ▯▯▯▯▯▯▯▯▯▯▯▯A ▯▯▯-▯▯▯▯▯▯	
10	2013.7.8.	□□□ 안내책자 요청	□□□	♥♥도 ▯▯▯시 ▯▯▯ 구 ▯▯▯1동 ▯▯▯마을 ♥♥♥아파트 ♥♥♥동♣♣♣호	
11	2013.9.13.	□□□ ★★★ 안내지도 및 □□ □□지도 답변수	▶▶▶	▯▯시 ▯▯▯구 ▷▷1동 ♣♣♣아파트 ○○○동 ◆◆◆호	
12	2013.9.14.	□□□ 안내책자와 ★★★지도 부탁드립니다	◀◀◀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	
13	2013.10.26.	★★지도 부탁드립니다	☆☆☆	▯▯ ▯▯시 ◆◆◆구 ▯▯▯동 ▯▯▯1차아파트 ♣♣♣동 ♣♣♣호	
14	2014.8.4.	안내를 받고자합니다	★★★	○○○ - ○○○ ♣♣ ▯▯▯시 ◆◆◆구 ▯▯▯2길 39 ▼동 ▯▯▯호(▽▽동,♥♥아파트)	
15	2014.8.15.	★★지도 및 □□□안내책자 요청합니다	○○○	♥♥ ○○시 ●●●29번길, 37, ○○○○-◆◆◆(◆◆◆동, □□3차 아파트)	
16	2014.8.30.	안 내책자 부탁드립니다	●●●	♥♥도 ◆◆시 ○○○403 (♥♥동,▯▯▯아파트 ▯▯▯ ♣♣♣호)	
17	2014.10.20.	□□□ 안내도 요청	○○○	○○시 ◇◇구 □□동 ◆◆◆◆ 아파트 ♣♣♣ ▯▯▯▯▯	
18	2015.10.6.	□□□안내도 부탁드립니다.	◇◇◇	☆☆☆☆시 ★★구 ○○동 ●●아파트 ○○○동◇◇◇호	
19	2015.10.18.	□□□ □□ 안내도 부탁드립니다	◆◆◆	♣♣시 ☆☆☆ □□동 ▲▲대로○○○번길8 □□마을 ◆◆◆아파트 ◆◆◆동 □□□호	
20	2016.6.5.	안내 책자 요청합니다.	□□□	◇◇◇시 ★★구 ◆◆◆32길 31 ♥♥♥♥♥♥♥♥아파트 ★★동 ○○○호 (◆◆동)	
21	2018.4.5.	□□□지도 보내주세요.	■ ■ ■	★★ ◆◆1길 38 ◆◆◆ 3단지 ♣♣♣동 ▯▯▯호	
22	2018.5.19.	□□□ □□ 안내도 부탁 드립니다.	△△△	◆◆◆시 ○○구 ☆☆로 □□번길 132, ♣♣♣동 ▯▯▯호	
23	2018.10.19.	□□□ 안내도 부탁 및 질문 몇가지	▲▲▲	◆◆ ★구 ◆◆로 ◇◇◇번길 87 ▯▯▯동 ♣♣♣호	
24	2019.6.17.	부탁드립니다	▽▽▽	♣♣ ▯▯▯군 ◇◇읍 ◆◆로 ☆☆☆-★★ ▯▯ ♣♣♣동 ○○○호	
25	2019.7.29.	봉화군 □□□안내지도 및 책자 요청	▼▼▼	◆◆ ◇구 ♣♣로 281 ♥♥♥아파트 ●●●-○○○	
26	2019.7.30.	□□□□ 요청 건	◁◁◁	●● ♥♥시 ◇◇ ◆◆구 ♣♣동 2가 ☆☆아파트 ◆◆◆동 ▯▯▯호	
27	2019.8.12.	□□□안내책자 신청합니다.	◀◀◀	△△도 ▲▲시 ▽▽길 72 ▯▯▯▯▯ ▯▯▯동 ○○○호	
28	2019.9.17.	□□□안내 책자 신청합니다.	▷▷▷	♥♥도 ♣♣시 ▯▯▯로 ▯▯▯번길 7 ♥♥♥ ♥♥ 아파트 ♣♣♣동 ◁◁◁호	
29	2019.10.2.	안내책자(지도)신청합니다	▶▶▶	♥♥도 ◁◁시 ♣♣구 ▯▯▯▯▯로 ▯▯▯번길36 ▽▽단지 ▯▯▯동 ◆◆◆ 호	
30	2019.10.14.	봉화군 □□□안내책자 신청합니다.	♣♣♣	05628 ◇◇시 ◆◆구 ♥♥♥23길 67 ▯▯▯▯▯ △△△호	
31	2020.2.13.	□□□책자를 받고싶습니다.	♠♠♠	●●시 ○○군 ○○읍 ▯▯▯2길 7, ○○○동▯▯▯호 (○○○○○○○)	◆◆◆-◆◆◆-◆◆◆ ◆◆◆
32	2020.11.16.	□□□안내 책자	♥♥♥	●●●시 ○구 ●●●89.○●○호	◆◆◆-◆◆◆-◆◆◆ ◆◆◆
33	2021.2.22.	□□□안내책자 신청합니다	♥♥♥	○○시 ○○구 ○○○로 151 ◇◇◇동 ◆◆◆호	◆◆◆-◆◆◆-◆◆◆ ◆◆◆
34	2021.8.10.	□□□안내책자 부탁드립니다.	♣♣♣	♣♣ ◆◆시 ◆◆구 □□□로 □□번길 1	◆◆◆-◆◆◆-◆◆◆ ◆◆◆
35	2021.10.4.	□□□안내책자 신청	♣♣♣	우◆◆◆도 ○○시 ○○로 20 ▯▯▯apt. ▯▯▯	◆◆◆-◆◆◆-◆◆◆ ◆◆◆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용역 계약 분할 발주 부적정
소 관 청	봉화군
관 계 부 서	▣▣▣▣실, ○○과, ▣▣▣▣과, ⊕⊕⊕⊕과
내 용	

봉화군 ▣▣▣▣실, ▣▣▣▣과, ⊕⊕⊕⊕과에서는 ○○과를 통해 각각 군정 홍보를 위한 군정지 제작용역, 농촌빈집정비사업 지정폐기물(폐석면) 처리용역, 폐석면(슬레이트)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사업에 대하여 봉화군 관내외 업체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계약체결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1절 5. 분할계약의 금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4)」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경쟁입찰 대상으로 통합 발주할 수 있는 단일 용역사업을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로 분할하여 특정 업체와 부당하게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되고, 통합발주하여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타당하다.

4) 2021.1.1. 폐지, 현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그런데 봉화군 ㉸㉸㉸㉸실 등 3개 부서에서는 단일 사업으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과업지시서의 사업목적과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과업의 내용이 동일<sup>5)</sup>하며, 같은 회계연도 내 계속 추진되는 등 용역수행 시기가 같은 사업인데도 신속한 민원 처리, 효율적 사업수행, 특정업체가 봉화군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다는 등의 사유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사업으로 분할 발주하여 ○○과에 계약을 요청하였다.

또한, ○○과에서는 분할 발주된 사업의 과업지시서와 실시설계내역서 등의 사업내용이 동일한 점을 고려하여 단일 사업으로 통합 발주할 수 있는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발주부서와 같은 사유로 특정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통합 발주 시 지방계약법에 따른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하한을 적용으로 65,464천 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었는데도 아래 [표 1]~[표 3]과 같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위한 분할 발주로 인하여 경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표 1] 군정지 제작용역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내역(㉸㉸㉸㉸실)

(단위 : 원)

연번	계약명	계약상대자	통합발주시 최저 낙찰 예산금액 <sup>6)</sup>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10건		190,748,290				199,816,000
1	2019년 ○○○○ ○○ ○○○○○○ ○○ 군정지(여름호) 제작 용역	㉸㉸㉸㉸㉸	57,174,640	20190624	20190624	20190718	19,980,000
2	2019년 ○○○○ ○○ ○○○○ ○○○ 군정지(가을호) 제작 용역	㉸㉸㉸㉸㉸		20190905	20190905	20190926	19,980,000
3	2019년 ○○○○ ○○ ○○○○ ○○○ 군정지(겨울호) 제작 용역	㉸㉸㉸㉸㉸		20191128	20191128	20191219	19,982,000

5) 가) ㉸㉸㉸㉸실 소관 “○○○○ ○○ ○○○○○○ 군정지 제작용역”의 경우, (1) 사업목적으로 ‘봉화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행정뉴스 및 공지사항 등을 제공하며, 군의회 활동상 홍보 및 군내 관광 등을 소개하며,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군정소식지 제작’으로 되어 있고, (2) 계약상대자는 ‘군정지 제작 목적 및 취지 등 군정지 제작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봉화군이 의도하는 방향에 맞게 인쇄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등 분할 발주된 사업이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나) ㉸㉸㉸㉸과 소관 “농촌빈집정비사업 지정폐기물 처리용역”과 ㉸㉸㉸과 소관 “폐석면(슬레이트) 지정폐기물 처리용역”의 경우 (1) 과업지시서 및 실시설계내역서의 내용은 ‘석면 처리 용역’이며, (2)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범위는 ‘폐석면 수집 운반 및 폐기물 처리’로 분할 발주된 사업이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연번	계약명	계약상대자	통합발주시 최저 낙찰 예산금액 <sup>6)</sup>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4	2020년 ○○○○ ○ ○○○○ ○○○ 군정지(봄호) 제작 용역	○○○○○○○	76,232,850	20200311	20200316	20200414	19,982,000
5	2020년 ○○○○ ○ ○○○○ ○○○ 군정지(여름호) 제작 용역	○○○○○○○		20200625	20200625	20200724	19,982,000
6	2020년 ○○○○ ○ ○○○○ ○○○ 군정지(가을호) 제작 용역	○○○○○○○		20200921	20200923	2021022	19,982,000
7	2020년 ○○○○ ○ ○○○○ ○○○ 군정지(겨울호) 제작 용역	○○○○○○○		20201215	20201216	20201224	19,982,000
8	2021년 ○○○○ ○ ○○○○ ○○○ 군정지(봄호) 제작 용역	○○○○○○○	57,340,800	20210318	20210325	20210423	19,982,000
9	2021년 ○○○○ ○ ○○○○ ○○○ 군정지(여름호) 제작 용역	○○○○○○○		20210802	20210805	20210903	19,982,000
10	2021년 ○○○○ ○ ○○○○ ○○○ 군정지(가을겨울호) 제작 용역	○○○○○○○		20211104	20211108	2021119	19,982,000

※ 봉화군 제출자료 재구성

[표 2] 농촌빈집정비사업 지정폐기물(폐석면) 처리용역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내역(○○○○○○○○과)

(단위 : 원)

연번	계약명	계약상대자	통합발주시 최저 낙찰 예산금액 <sup>7)</sup>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12건		177,392,360				185,816,000
1	2020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지정 폐기물 처리용역(○○읍,△△면)	○○○○○○○(주)	50,076,070	20200323	20200326	20200424	17,866,000
2	2020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지정 폐기물 처리용역(○○면,○○면, ●●면,▲▲면,▽▽면)	○○○○○○○(주)		20200323	20200326	20200424	16,909,000
3	2020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지정 폐기물 처리용역 (◇◇면, ◆◆면)	○○○○○○○(주)		20200323	20200326	20200424	17,728,000
4	2021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지정 폐기물 처리용역 (▲▲면,◇◇면)	○○○○○○○(주)	70,371,490	20210405	20210406	20210427	19,789,000
5	2021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지정 폐기물 처리용역 (○○읍,△△면)	○○○○○○○(주)		20210405	20210406	20210427	20,194,000

6) (1) 2019~2020년 용역 건에 대해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북도 예규)」 [별표 1]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경쟁입찰 시 낙찰하한율(87.745%)을 적용  
(2) 2021년 용역 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7.14.)」 제25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35호, 2020.7.15. / 제2020-69호, 2020.12.24. / 제2021-43호, 2021.6.30.)에 의거 개별 계약 품의 금액의 88%(입찰 시 최저낙찰률)을 곱하여 모두 더한 값(「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연번	계약명	계약상대자	통합발주시 최저 낙찰 예산금액 <sup>7)</sup>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6	2021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지정 폐기물 처리용역(●●면)	○○○○○○(주)	56,944,800	20210405	20210406	20210427	10,708,000
7	2021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지정 폐기물 처리용역 (○○면, ●●면)	○○○○○○(주)		20210511	20210514	20210621	12,134,000
8	2021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지정 폐기물 처리용역 (◆◆면, ㉞면, ○○면)	○○○○○○(주)		20210514	20210514	20210621	10,957,000
9	2022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지정 폐기물 처리용역(▲▲면)	○○○○○○(주)		20220315	20220325	20220420	13,045,000
10	2022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지정 폐기물 처리용역(○○읍)	○○○○○○(주)		20220315	20220325	20220420	18,436,000
11	2022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지정 폐기물 처리용역(●●면)	○○○○○○(주)		20220315	20220325	20220420	15,391,000
12	2022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지정 폐기물 처리용역 (◆◆면, ◆◆면, ㉞면)	○○○○○○(주)		20220428	20220502	20220524	12,659,000

※ 봉화군 제출자료 재구성

[표 3] 폐석면(슬레이트)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내역(㉠㉡㉢㉣과)

(단위 : 원)

연번	계약명	계약상대자	통합발주시 최저 낙찰 예산금액 <sup>8)</sup>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64건		989,855,720				1,037,829,000
1	2020년 사회취약계층 지붕 개량사업 슬레이트 철거공사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1지구)	○○○○○○(주)	309,950,430	20200429	20200501	20200618	12,410,000
2	2020년 사회취약계층 지붕 개량사업 슬레이트 철거공사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2지구)	○○○○○○(주)		20200429	20200501	20200618	11,748,000
3	2020년 슬레이트 철거공사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면, ㉞면)	○○○○○○(주)		20200429	20200501	20200618	14,701,000

- 7) (1) 2020~2021년 용역 건에 대해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북도 예규)」 [별표 4]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경쟁입찰 시 낙찰하한율(87.745%)을 적용  
(2) 2022년 용역 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7.14.)」 제25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35호, 2020.7.15. / 제2020-69호, 2020.12.24. / 제2021-43호, 2021.6.30.)에 의거 개별 계약 품의 금액의 88%(입찰 시 최저낙찰률)을 곱하여 모두 더한 값(「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연번	계약명	계약상대자	통합발주시 최저 낙찰 예상금액 <sup>8)</sup>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4	2020년 슬레이트 철거공사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면)	○○○○○○○(주)		20200429	20200501	20200623	16,274,000
5	2020년 슬레이트 철거공사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면)	○○○○○○○(주)		20200429	20200501	20200618	16,247,000
6	2020년 슬레이트 철거공사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면, ◇◇면)	○○○○○○○(주)		20200429	20200501	20200629	14,324,000
7	2020년 슬레이트 철거공사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읍)	○○○○○○○(주)		20200429	20200501	20200618	20,203,000
8	2020년 슬레이트 철거공사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면)	○○○○○○○(주)		20200429	20200501	20200629	12,723,000
9	2020년 슬레이트 철거공사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면)	○○○○○○○(주)		20200429	20200501	20200629	14,260,000
10	2020년 하반기 슬레이트 지정폐기물 처리용역(주택)	○○○○○○○(주)		20201019	20201019	20201117	18,998,000
11	2020년 봉화군 방치슬레 이트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면)	○○○○○○○(주)		20201019	20201019	20201117	16,744,000
12	2020년 봉화군 방치슬레 이트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면)	○○○○○○○(주)		20201019	20201019	20201117	12,668,000
13	2020년 봉화군 방치슬레 이트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면 1지구)	○○○○○○○(주)		20201019	20201019	20201117	18,685,000
14	2020년 봉화군 방치슬레 이트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면 2지구)	○○○○○○○(주)		20201019	20201019	20201117	20,194,000
15	2020년 봉화군 방치슬레 이트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읍, △△면)	○○○○○○○(주)		20201019	20201019	20201117	18,179,000
16	2020년 봉화군 방치슬레 이트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면)	○○○○○○○(주)		20201019	20201019	20201117	17,599,000
17	2020년 봉화군 방치슬레 이트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면)	○○○○○○○(주)		20201019	20201019	20201117	19,954,000
18	2020년 봉화군 방치슬레 이트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면)	○○○○○○○(주)		20201019	20201019	20201117	19,136,000
19	2020년 봉화군 방치슬레 이트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면)	○○○○○○○(주)		20201019	20201019	20201117	19,402,000

연번	계약명	계약상대자	통합발주시 최저 낙찰 예상금액 <sup>8)</sup>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20	2020년 봉화군 방치슬레이트 지정폐기물 처리용역(◇◇면)	○○○○○○○(주)	300,544,170	20201019	20201019	20201117	10,524,000
21	2021년 슬레이트 철거공사 지정폐기물 처리용역(주택3지구)	○○○○○○○(주)		20210517	20210517	20210714	13,846,000
22	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슬레이트 철거공사 지정폐기물 처리용역(2지구)	○○○○○○○(주)		20210517	20210517	20210714	12,180,000
23	슬레이트 철거공사(자부담) 지정폐기물 처리용역(2권역)	○○○○○○○(주)		20210517	20210517	20210715	17,240,000
24	2021년 슬레이트 철거공사(자부담) 지정폐기물 처리용역(1권역)	○○○○○○○(주)		20210526	20210528	20210726	19,715,000
25	2021년 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슬레이트 철거공사 지정폐기물 처리용역(1지구)	○○○○○○○(주)		20210526	20210528	20210714	12,309,000
26	슬레이트 철거공사 지정폐기물 처리용역(주택1지구)	○○○○○○○(주)		20210526	20210528	20211117	18,712,000
27	2021년 슬레이트 철거공사 지정폐기물 처리용역(주택4지구)	○○○○○○○(주)		20210609	20210611	20210714	18,574,000
28	슬레이트 철거공사 지정폐기물 처리용역(주택2지구)	○○○○○○○(주)		20210609	20210611	20210714	16,550,000
29	2021년 슬레이트 철거공사 지정폐기물 처리용역(주택5지구)	○○○○○○○(주)		20210617	20210621	20210714	17,194,000
30	주택개량사업 슬레이트 철거공사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주)		20210617	20210621	20210714	12,659,000
31	하반기 슬레이트 철거공사 지정폐기물 처리용역(주택1지구)	○○○○○○○(주)		20211021	20211022	20211215	19,632,000
32	하반기 슬레이트 철거공사 지정폐기물 처리용역(주택2지구)	○○○○○○○(주)		20211021	20211022	20211215	20,184,000

연번	계약명	계약상대자	통합발주시 최저 낙찰 예상금액 <sup>8)</sup>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33	하반기 슬레이트 철거공사 (자부담) 지정폐기물 처리 용역(2지구)	○○○○○○○(주)	379,361,120	20211022	20211025	20211130	15,198,000
34	하반기 슬레이트 철거공사 (자부담)지정폐기물 처리 용역(1지구)	○○○○○○○(주)		20211022	20211025	20211215	13,846,000
35	방치슬레이트 지정폐기물 처리용역(◇◇면1지구)	○○○○○○○(주)		20211027	20211101	20211130	20,148,000
36	방치슬레이트 지정폐기물 처리용역(◇◇면2지구)	○○○○○○○(주)		20211028	20211101	20211130	19,982,000
37	방치슬레이트 지정폐기물 처리용역(●●면)	○○○○○○○(주)		20211220	20211223	20220111	18,657,000
38	방치슬레이트 지정폐기물 처리용역(▲▲면)	○○○○○○○(주)		20211220	20211224	20220111	18,326,000
39	방치슬레이트 지정폐기물 처리용역(◎◎면)	○○○○○○○(주)		20211220	20211223	20220111	10,156,000
40	2022년 △△면 관내 방치 슬레이트 지정폐기물 처리 용역(▶▶리, ◀◀리)	○○○○○○○(주)		20220214	20220217	20220302	17,664,000
41	2022년 △△면 관내 방치 슬레이트 지정폐기물 처리 용역(▲▲리, ▼▼리)	○○○○○○○(주)		20220214	20220217	20220302	15,235,000
42	■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정 폐기물 처리용역(1차)	○○○○○○○(주)		20220330	20220401	20220624	14,011,000
43	■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정 폐기물 처리용역(2차)	○○○○○○○(주)		20220330	20220401	20220624	15,216,000
44	2022년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공사 지정폐기물 처리 용역	○○○○○○○(주)		20220408	20220413	20220524	11,306,000
45	2022년 사회취약계층 지붕 개량사업 슬레이트 철거공사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주)		20220408	20220413	20220624	18,510,000

연번	계약명	계약상대자	통합발주시 최저 낙찰 예산금액 <sup>8)</sup>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46	2022년 슬레이트 철거 공사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주택1지구)	○○○○○○(주)		20220408	20220413	20220624	19,191,000
47	2022년 슬레이트 철거 공사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주택2지구)	○○○○○○(주)		20220408	20220413	20220624	15,768,000
48	2022년 슬레이트 철거 공사(자부담) 지정폐기물 처리용역(주택1지구)	○○○○○○(주)		20220408	20220413	20220624	16,670,000
49	2022년 슬레이트 철거 공사(자부담) 지정폐기물 처리용역(주택2지구)	○○○○○○(주)		20220408	20220413	20220624	15,180,000
50	봉화 ㉠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 ㉠ 센터)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주)		20220428	20220502	20220722	16,141,000
51	2022년 ㉠면 관내 방치 슬레이트 지정폐기물 처리 용역(㉠리, ㉠리)	○○○○○○(주)		20220524	20220530	20220624	16,909,000
52	2022년 ㉠면 관내 방치 슬레이트 지정폐기물 처리 용역(㉠리)	○○○○○○(주)		20220524	20220530	20220624	19,945,000
53	2022년 ㉠면 관내 방치 슬레이트 지정폐기물 처리 용역(㉠리, ㉠리)	○○○○○○(주)		20220524	20220530	20220624	16,412,000
54	2022년 ㉠면 관내 방치 슬레이트 지정폐기물 처 리용역(㉠리, ㉠리)	○○○○○○(주)		20220524	20220530	20220624	13,892,000
55	2022년 ㉠면 관내 방치 슬레이트 지정폐기물 처리 용역(㉠리, ㉠리)	○○○○○○(주)		20220524	20220530	20220624	17,599,000
56	2022년 ㉠면 관내 방치 슬레이트 지정폐기물 처리 용역(㉠리, ㉠리, ㉠리)	○○○○○○(주)		20220524	20220530	20220624	13,257,000
57	㉠지구 새뜰마을사업 지 정폐기물 처리용역(1차)	○○○○○○(주)		20220614	20220614	20221210	19,366,000

연번	계약명	계약상대자	통합발주시 최저 낙찰 예상금액 <sup>8)</sup>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58	궤지구 새뜰마을사업 지정폐기물 처리용역(2차)	○○○○○○(주)		20220614	20220614	20221210	19,835,000
59	궤소하천 정비사업 지정폐기물처리용역(5차)	○○○○○○(주)		20220704	20220706	20220722	13,533,000
60	2022년 ㉞면 관내 방치 슬레이트 지정폐기물 처리용역(1차)	○○○○○○(주)		20220705	20220712	20220722	10,828,000
61	2022년 ㉞면 관내 방치 슬레이트 지정폐기물 처리용역(2차)	○○○○○○(주)		20220808	20220810	20220908	11,306,000
62	2022년 하반기 슬레이트 철거공사 지정폐기물 처리용역(주택1지구)	○○○○○○(주)		20220808	20220810	20221107	19,283,000
63	2022년 하반기 슬레이트 철거공사 지정폐기물 처리용역(주택2지구)	○○○○○○(주)		20220808	20220810	20221107	19,228,000
64	2022년 하반기 슬레이트 철거공사 지정폐기물 처리용역(주택3지구)	○○○○○○(주)		20220808	20220810	20221107	11,463,000

※ 봉화군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봉화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8) 2020~2022년 용역 건에 대해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북도 예규)」 [별표 4]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경쟁입찰 시 낙찰하한율(87.745%)을 적용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 등 부적정
소 관 청	봉화군
관 계 부 서	☐☐☐☐실
내 용	

봉화군 ☐☐☐☐실은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등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하고 사후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농지를 농업생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등에 255건의 농지전용협의를 처리하였고, 1,845,110천 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하였다.

### 1. 농지보전부담금 미납자 개발행위 허가 부적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농지법」 제34조에 따르면 농지를 전용하려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농지전용의 신고 수리를 하려는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여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대상이 되는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인가·허가·승인·신고 수리 등을 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지보전부담금이 납부되었는지 확인한 후 인가 등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봉화군 ㉠㉡㉢㉣실은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개발행위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이 납부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했다.

그러나 봉화군 ㉠㉡㉢㉣실은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표 1]과 같이 2022년 5건의 농지보전부담금 미납 건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처리하였다.

[표 1] 2022년 개발행위 허가 후 농지보전부담금 미납 현황

(단위 : 천 원)

부 과		수 납		미 납		비 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54	369,711	46	316,151	8	53,560	개발행위 허가(신규) 5건 : 46,778 개발행위 미허가 3건 : 6,781

## 2.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예치 부적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 제4항에 따르면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고,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봉화군 ☐☐☐☐실은 개발행위허가 시 이행보증금의 예치가 필요한 경우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이행보증금이 미납된 경우 납부 독려 후 허가·인가 등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러나 위 부서는 [표 2]와 같이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66건의 이행보증금 1,790,405천 원이 예치되지 않고 있는데도 납입 안내나 독려를 하지 않았다.

[표 2] 개발행위 변경허가시 이행보증금 미납입 현황

(단위 : 건, 천 원)

구분	허가건수		이행보증금 납입		이행보증금 미납입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9년	14	369,950	10	208,846	4	154,444	
2020년	69	1,610,345	44	1,032,203	25	578,142	
2021년	70	1,918,079	46	1,201,894	24	716,185	
2022년	29	1,317,555	16	975,923	13	341,632	
합 계	182	5,215,929	116	3,418,866	66	1,790,403	

### 3.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전기사업허가 준비기간 만료 조치 부적정

「전기사업법」 제9조에 따르면 전기사업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하고, 허가권자는 전기 사업을 허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기사업별 또는 전기설비별로 구분하여 준비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을 수 없고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르면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봉화군 ☐☐☐☐실은 전기사업자가 허가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

도록 전기사업 준비기간 만료 대상자에게 기간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2022년 9월 감사일 현재까지 전기사업 준비기간이 만료된 588건에 대해 청문을 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전기사업 준비기간 만료’ 사전 안내를 하지 않는 등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전기사업허가 준비기간 만료에 대한 조치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봉화군수는**

- ① 「농지법」에 따라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 46,778,550원을 신속하게 징수하도록 조치하고, (시정)
- ② 앞으로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치 등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농지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등 최종 인·허가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부적정  
소 관 청 봉화군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봉화군 ■■■■■과에서는 7면 2리 산29-7번지 소재 웰빙체험장을 ◀◀◀◀◀조합법인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도록 하였고, 봉화군 ▲▲▲▲▲▲▲▲▲과에서는 7면 2리 산65-1번지 소재 ♪♪♪휴게소를 AAA 등에게 사용·수익허가 하였다.

### 1. ■■■■■과의 경우

#### 가. ○○권역 웰빙체험장 민간위탁운영 사후관리 부적정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 및 제14조에는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고,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봉화군 ■■■■■과에서는 [표 1]과 같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권역 농촌마을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1]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현황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목적
○○권역농촌마을 <sup>9)</sup> 종합개발사업	67억원 (농림부 공모사업)	2006~2015년	도농교류센터, 웰빙체험장 등	5개 마을 공동소득 기반 확충 등

또한 [표 2]와 같이 2017. 6월경(날짜 누락) 봉화군수와 ◀◀◀◀◀조합법인 간 ‘○○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위수탁 관리 협약서’(이하 “협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협약을 체결하였다.

[표 2] ○○권역 농촌마을개발사업 위수탁 관리 협약서 내용(웰빙체험장)

위 치	부지면적 (건축면적)	위탁기관	위탁기간	위탁목적	비 고
7면 나리 산29-7번지	4,838㎡ (211.2㎡)	◀◀◀◀◀ 조합법인	2017.6~2022.6 (5년)	주민공동소득 및 생활수준 증대	2개동 다가구주택 및 부속시설(화장실, 샤워장)

협약서 제7조에는 ○○권역 시설의 이용목적에 위반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고, ○○권역의 농촌·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협약서 [특약사항]에는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권역법인 통장을 별도 개설 및 관리하고, 필요시 이해관계인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당해연도 운영실적을 다음연도 1월까지 제출토록 한다고 되어 있고, 시설물 사용·체험료 징수기준은 불임(시설물 및 체험프로그램별 무료 또는 1~150천 원)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협약서 하단에는 창출된 소득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분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봉화군 ■■■■■과에서는 봉화군과 ◀◀◀◀◀조합법인간 체결한 위수탁 협약에 따라 체험 및 사용료 징수 등으로 발생한 수익금 등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우선 사용되고 있는지, 주민공동소득을 위한 마을 기금 등으로 납부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9) 위 시설물은 봉화군 소유의 행정재산이며, 봉화군과 ◀◀◀◀◀조합법인간 민간위수탁 협약에 따라 ◀◀◀◀◀조합법인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음

따라 지휘·감독하고,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2017. 6월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2. 9. 27. 감사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민간위탁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및 지출 현황을 알 수가 없어 수입과 지출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못한 사실이 있다.

#### 나. 민간위탁 행정재산(웰빙체험장) 재위탁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에는 행정재산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협약서 제8조에는 봉화군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양도, 재위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조합법인이 봉화군의 승인없이 웰빙체험장 운영을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음에도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휴게소 운영자 AAA<sup>10)</sup>에게 전대(轉貸)하여 관리위탁하고 있었으나<sup>11)</sup> 봉화군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는 협약서에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위수탁 관리 협약서’에는 농촌·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되어 있으나, 참가자의 체험신청서가 보관되어 있지 않는 등 당초 목적인 체험장으로서의 기능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아울러 웰빙체험장은 체험관광사업 목적임에도 봉화군의 승인없이 2019년부터 제3자(AAA)에게 전대된 후 체험관광사업의 기능은 퇴색되고 펜션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10) ♣♣♣휴게소 사용·수익 수허가자(허가기간 : 2019.1.1. ~ 2024.12.31)

11) 웰빙체험장 전기요금 납부 고지서와 AAA 통장 거래내역의 요금액 일치 확인

#### 다. 웰빙체험장 사용료 불법 징수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제16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공공시설인 웰빙체험장의 이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야 함에도 2017. 6월 위수탁 관리 협약일로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사용료에 대한 조례 근거 마련 등의 조치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

#### 라. ○○권역 웰빙체험장 내 불법건축물 방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에서는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장부상의 지목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표(사진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8조에서도 재산관리관은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사시에는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를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1면 2리 산29-7번지 웰빙체험장 내 4개(1개당 면적 10.1㎡)의 방갈로가 ○○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2011년 이전부터 불법건축물(방갈로 지칭)로 존재하고 있었고, 건축허가 당시 건축도면에 방갈로(기존)로 표기되어 있었더라도 건축물 대장에 없는 건축물이 있다면 철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웰빙체험장을 사용하는 이용객들이 불법 건축물을 사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2. ▲▲▲▲▲▲▲▲▲▲의 경우

### 가. 공유재산(♀♀♀휴게소) 불법증축 방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에서는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장부상의 지목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표(사진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8조에서도 재산관리관은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사시에는 무허가건물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를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과에서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소홀히 하여 [표 3]과 같이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건물에 영구시설물이 불법 증축되어 있는데도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3] ♣♣♣휴게소 불법 증축 현황

위 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구 조	위반사항	위반자 (위반일시)
ㄱ면 ㄴ리 산65-1번지	3,073㎡ (103.77㎡)	일반목구조 (1층 1동)	샌드위치 패널 불법 증축(50.3㎡), 칸막이 설치	BBB (2005~2008년 추정)

#### 나. 공유재산(♣♣♣휴게소) 관리 부적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 및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8조에 따르면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휴게소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기간 동안 매년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허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 공유재산의 관리 상태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허가사항이 적정하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정하거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과에서는 [표 4]와 같이 ♪♪♪휴게소를 농산물판매 및 간이매점 목적으로 사용·수익 허가하였으나, 현재는 허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농산물판매 및 간이매점 외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민박시설(현장 확인 및 해당부서 조사)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표 4] ♪♪♪휴게소 사용·수익허가 현황

수허가자	허가기간	허가목적	허가방법
BBB	2014.7.28.~2018.12.31.	농산물판매 및 간이매점	수의계약
AAA	2019.1.1.~2019.12.31.	농산물판매 및 간이매점	수의계약
AAA	2020.1.1.~2021.12.31.	농산물판매 및 간이매점	수의계약
AAA	2022.1.1.~2024.12.31.	농산물판매 및 간이매점	유찰 후 수의계약

그 결과 사용·수익허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적절한 행정조치가 되지 않는 등 공유재산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

#### 다.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산정 부적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1조에는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하고,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

측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과는 2021. 12.월 ♣♣♣휴게소의 2022년 1년간의 사용료를 산출할 때 건축면적외 부지면적은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표 5]와 같이 부지면적을 건물면적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하고 사용료를 산정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22년 사용료를 408,270원 과소 부과하였다.

[표 5] 2022년 허가시 연간 ♣♣♣휴게소 사용료 산정 현황

구분	적용산식	실제 적용		정당한 산정 결과		차액
		면적(㎡)	사용료(원)	면적(㎡)	사용료(원)	
건물	건물시가표준액 ×면적×5%	103.77	2,962,630	103.77	2,962,630	-
토지	토지시가표준액 ×면적×5%	103.77	14,260	3,073	422,530	408,270원

**조치할 사항 봉화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실제 공유재산 사용 현장에서 관련 규정 및 허가(계약, 협약)사항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확인 후 규정 및 허가(협약)사항이 준수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조례에 명시하고, 불법건축물 또는 불법증축된 경우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봉화군 캠핑장 위탁운영 부적정
소 관 청	봉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봉화군 ▽▽▽▽▽▽과에서는 봉화군 일원에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필요한 숙박·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공유재산인 ●●오토캠핑장<sup>12)</sup>과 봉화○○○○○○<sup>13)</sup>을 수탁자와 관리위탁 계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다.

### 1.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부적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제14839호, 2017. 7. 26.)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도록 되어있고,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와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12) 7면 2리 631 소재

13) 봉화○○○○○○연수원으로도 지칭되며 폐교를 개조하여 야영장으로 운영(7면 2리 90-5 일원)

가능하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봉화군 ▽▽▽▽▽과에서는 수탁자 모집 공고 시 일반입찰로 공고 하여 2회 유찰되었을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15년 봉화군 캠핑장 위탁운영자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 자격을 “공고일 기준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하고 있는 자”로 제한하여 다른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를 제한하여, [표 1]과 같이 각각 2회, 7회 유찰로 최고가 낙찰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고, 수의계약이 불가능한데도 행정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허가한 사실이 있다.

[표 1] 봉화군 캠핑장 계약 현황

대상	수탁자	입찰구분 (최종계약)	입찰금액 (최종계약금액) (원)	유찰횟수	계약기간 (갱신)	비고
●●오토 캠핑장	ㄷ2리마을회	지역제한경쟁 (수의계약)	464,500 (418,050)	2회	'18.7.03.~ '23.7.2.(5년)	최초계약 '15.7.03.
봉화○○○○ ○○	봉화○○○○○○ 영농조합법인	지역제한경쟁 (수의계약)	15,082,590 (7,541,340)	7회	'18.7.03.~ '23.7.2.(5년)	최초계약 '15.7.03.

## 2.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산정 부적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4839호, 2017. 7. 26.)」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 2. 9.) 제14조, 제3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 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토지의 가격은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하며 토지, 주택외의 재산은 「지방세법」 제4조 제2

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에서는 사용료의 요율을 1,000분의 50으로 하고 있고, 「2018 공유재산 업무편람(행정안전부)」에서는 사용료 산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하도록 되어 있다.

<사용료 산정방법>  
연간 사용료 = 재산가격 × 사용료율  
※ 재산가격=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격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28호, 2018. 2. 9.)」 제1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을 위한 일반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3회차 일반입찰부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매회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봉화군 ▽▽▽▽▽과에서는 봉화○○○○○○영농조합법인에게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계산 방법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86,332,816원을 징수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봉화군 캠핑장 위탁운영자 사용료를 징수하며 2015년 사용·수익 수허가자 모집 당시 제한경쟁 입찰공고를 7회(일반입찰 3회차부터 경감 가능) 하였다는 이유로 예정가격을 최초 예정가격에서 50% 경감하여 수의계약 하였으며, 2015년 수의계약 당시의 사용료 경감률을 2018년 갱신 계약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2018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표 2]와 같이 사용료 총 44,796,342원을 부과하여 41,536,474원을 과소 부과한 사실이 있다.

**[표 2] 봉화○○○○○○ 7회 유찰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단위 : 원)

연도	토지면적	건물면적	공시지가	건물시가총액	토지시가총액	건물, 토지 합계	요율	정상 사용료	실제 징수 사용료	과소 부과내역
합계								86,332,816	44,796,342	41,536,474
2018	9,352	1,475	13,200	192,933,000	123,446,400	316,379,400	5%	15,818,970	7,624,730	8,194,240
2019	9,352	1,475	14,400	196,003,430	134,668,800	330,672,230	5%	16,533,612	7,731,940	8,801,672
2020	9,352	1,475	15,500	202,035,270	144,956,000	346,991,270	5%	17,349,564	9,473,200	7,876,364
2021	9,352	1,475	16,300	204,984,690	152,437,600	357,422,290	5%	17,871,115	9,844,472	8,026,643
2022	9,352	1,475	18,200	204,984,690	170,206,400	375,191,090	5%	18,759,555	10,122,000	8,637,555

### 3. 야영장 등록관리 부적정

「관광진흥법」 제3조, 제4조에 따르면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야영장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사항 중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 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봉화군 ▽▽▽▽▽과에서는 2015년부터 야영장 관리 수탁자로 계약한 봉화○○○○○○영농조합법인과 ㄷ2리마을회에 야영장업을 실제 운영하는 수탁자로 변경 등록하도록 관리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야영장 실제 운영자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등록 없이 감사일 현재까지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 4. 공유재산 사고 대비 보험가입 등 부적정

「관광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게 되어 있다.

또한 봉화군수가 수탁자와 체결한 협약서<sup>14)</sup> 제14조에 따르면 수탁자는 시설

14)봉화○○○○○○ (봉화○○○○○○영농조합법인) : 2015. 5. 19., 2018. 5월  
●●오토캠핑장 (ㄷ2리마을회) : 2015. 6월, 2018. 5월

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일체의 사고 등의 변상을 위해 계약체결 전까지 손해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낙찰자서류 제출시 증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4839호, 2017. 7. 26.)」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보며,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28호, 2018. 2. 9.)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건물에 대해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가입한 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유상·무상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을 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르면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봉화군에서는 공유재산인 캠핑장에서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표 3]과 같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영조물손해배상 공제를 가입하여 공제회비를 지출하였다.

그리고 봉화군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회원으로 등록한 영조물배상공제의 보통약관에서는 회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표 3] 봉화군에서 지출한 공제회비 내역

(단위 : 원)

시설명	구분	합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오토 캠핑장	영조물 손해배상	8,425,100	1,767,500	2,079,600	1,526,000	1,526,000	1,526,000
봉화○○○ ○○○	소계	14,011,270	892,000	968,390	4,020,890	4,020,890	4,109,100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4,046,670	750,500	801,990	801,990	801,990	890,200
	영조물 손해배상	9,964,600	141,500	166,400	3,218,900	3,218,900	3,218,900

따라서 봉화군 ∇∇∇∇∇과에서는 캠핑장을 운영하는 수탁자에게 봉화군에서 가입한 공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보험에 가입할 것을 안내하여야 했고, 봉화군에서 납입한 봉화○○○○○○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비는 그 비용을 사용·수익허가 받은 봉화○○○○○○영농조합법인에 부과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수탁자가 손해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증서 원본을 봉화군에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고, 봉화군에서 지출한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를 봉화○○○○○○영농조합법인에 부과하지 않는 등 사고 대비 보험 관련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야영장 이용객의 사고 및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봉화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야영장 변경등록 및 야영장 운영자 책임보험 가입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소 관 청	봉화군
관 계 부 서	●●면, ■■■면, ▣▣면, ⊕⊕면
내 용	

봉화군 읍·면에서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고 있다.

「농지법」 제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000㎡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적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39호, 2016. 12. 19.)」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읍·면장은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요건 확인·심사할 경우 신청인이 투기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자 농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농업경영을 위장할 목적으로 취득 농지에 수목·묘목 등 다년생식물 등을 식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발급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봉화군 읍·면에서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과 취득하고자 하는 면적,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면적의 총 합이 1,000㎡ 미만임을 확인하고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요건을 검토하여 적합한 심사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봉화군 ●●면 등 4개 면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 12명에 대해 개인 또는 세대원의 총 취득 면적이 농지소유 상한면적 1,000㎡를 초과하여 총 19,917㎡(초과분 9,917㎡) 면 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였으며, 그 중 ▣▣면 비리 3-4 등 5개 필지 2,657㎡는 매매된 사실이 있다.

[표]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적정 발급 내역

연번	소관 부서	성명	발급일자	지목	농지소재지	취득면적 (㎡)	총면적 (㎡)	부적정 내역	비고
<b>총 계</b>						<b>19,917</b>	소유 상한 1000㎡		
1	○○면	AAA	2021-07-06	전	ㄱ리 933	1,702	1,702	702㎡ 초과	
2	○○면	BBB	2020-02-04	전	ㄱ리 26	215	1,044	44㎡ 초과	
				전	ㄱ리 32	238			
				전	ㄱ리 33	307			
				전	ㄱ리 34	284			
3	○○면	CCC	2020-10-20	답	ㄴ리 1025	99	7,564	6,564㎡ 초과	
			2020-10-20	답	ㄴ리 1027	2,430			
			2020-10-20	답	ㄴ리 1028	1,180			
			2020-10-20	전	ㄴ리 463-2	3,855			
4	▣▣면	DDD	2019-12-02	전	ㄷ리 193	655	1,197	197㎡ 초과	
			2020-05-01	전	ㄷ리 195-1	542			
5	▣▣면	EEE	2020-01-28	전	ㄹ리 52	643	1,626	626㎡ 초과	
			2020-01-28	전	ㄹ리 53	110.5			
			2020-01-28	전	ㄹ리 54	59.5			
		FFF	2020-01-28	전	ㄹ리 52	643			
			2020-01-28	전	ㄹ리 53	110.5			
			2020-01-28	전	ㄹ리 54	59.5			

연번	소관 부서	성명	발급일자	지목	농지소재지	취득면적 (㎡)	총면적 (㎡)	부적정 내역	비고
6	■■■면	GGG	2021-06-24	답	□리 1549	527.5	1,055	55㎡ 초과	
		HHH	2021-06-24	답	□리 1549	527.5			
7	■■■면	KKK	2020-08-27	전	ㄹ리 134-1	288	1,280	280㎡ 초과	
			2022-04-19	전	ㄹ리 135-3	992			
8	■▲면	JJJ	2019-10-14	전	ㅂ리 3-3	1,792	1,792	792㎡ 초과	
9	■▲면	RRR	2019-10-14	전	ㅂ리 3-4	1,565	1,565	565㎡ 초과	매매 (‘21.8.6.)
10	⊕⊕면	ZZZ	2022-03-29	전	ㅅ리 162	216	1,092	92㎡ 초과	매매 (‘22.4.22.)
			2022-04-19	전	ㅅ리 137	294			매매 (‘22.4.22.)
			2022-04-19	전	ㅅ리 205	225			매매 (‘22.4.22.)
			2022-04-19	전	ㅅ리 206	357			매매 (‘22.4.22.)

**조치할 사항 봉화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업무 소홀  
소 관 청 봉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봉화군 ㉠㉠㉠과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1.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업무 소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시장·군수에게 권한 위임)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하고,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체납될 경우 차량 등에 압류조치를 하여야 하고, 차량 압류의 경우 명의 이전·차령 초과 말소 등이 수시로 발생하

므로 압류대상 차량이 명의 이전 및 말소등록 되었을 경우에는 체납자 소유의 다른 차량을 압류하여 징수권 일실을 방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 다음 [표]와 같이 명의 이전·말소 등의 사유로 차량을 압류하지 못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건(2022. 9. 27. 감사일 현재 975건, 체납액 20,159천 원)에 대한 조회 결과 체납자가 다른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대체 압류 차량 조회를 하지 않아 699건(체납액 14,558천 원)에 대한 채권확보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채권 확보 현황

구 분	총 체납현황	채권확보	채권미확보	채권미확보 중 대체압류 가능
건수(건)	3,905	2,930	975	699
체납액(천 원)	108,483	88,324	20,159	14,558

## 2.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채권미확보로 징수권 소멸

「지방세기본법(제16854호, 2020. 1. 1. 시행)」 제3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일 경우 10년, 그 외의 경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0조에 따르면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압류 등의 사유로 중단된다고 되어 있다.

「지방세징수법(제18794호, 2022. 1. 28. 시행)」 제106조에 따르면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시효완성정리<sup>15)</sup>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채권확보가 되지 않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차량에 대해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전에 대체압류 차량 조회를 통해 대체압류할 차량이 있는 경우 압류를 통해 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하여야 하고, 대체

15) 2022. 1. 28. 개정 시행 이전에는 ‘결손처분’

압류할 차량이 없어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정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차량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대체압류 차량 조회를 하지 않아 감사대상 기간 중(2019. 9. 30. ~ 2022. 3. 31.) 체납차량 364건(체납액 7,802천 원)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이 소멸되었으며,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시효완성정리도 하지 않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조치할 사항   봉화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채권확보가 되지 않은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차량 699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대체압류하고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에 대해 시효완성정리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경 상 북 도

## 기 관 경 고 · 시 정 요 구

제 목 건설공사 구간 내 편입 국·공유지 사용 협의 없이 무단 훼손 사용  
 소 관 청 봉화군  
 관 계 부 서 ■■■■■■■■단, ▽▽▽▽▽▽과, ▲▲▲▲▲▲▲▲과,  
 ◆◆◆◆과, □□□□□□과, ▬▬▬▬▬▬과  
 내 용

봉화군 ■■■■■■■■단, ▽▽▽▽▽▽과, ▲▲▲▲▲▲▲▲과, ◆◆◆◆과, □□□□□□과, ▬▬▬▬▬▬과에서는 주민생활 편의 향상 등을 위하여 아래 [표 1] 과 같이 도로개설 및 하천정비공사 등 총 131건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

[표 1] 부서별 사업 추진 현황

(금액 단위 : 백만 원)

합계		■■■■■■■■■단		▽▽▽▽▽▽과		▲▲▲▲▲▲▲▲과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31	157,021	4	18,509	9	35,116	9	2,778
		◆◆◆◆과		□□□□□□과		▬▬▬▬▬▬과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68	56,231	33	38,119	8	6,268

※ 봉화군 제출자료 재구성

「도로법」 제25조, 제29조, 제38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하고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면 그 사유,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되어 있고

도로관리청이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①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에 따른 도로정비 허가, ②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및 협의 등 18개 개별법령에서 정한 인·허가 등을 위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로공사로 새로 공공시설<sup>16)</sup>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도로공사를 하려면 미리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sup>17)</sup>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하천법」 제27조, 제32조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하천공사시행계획<sup>18)</sup>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하려는 경우에 ①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등 20개 개별법령에서 정한 인·허가 등을 위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허가·인가·면허·승인·결정·해제·심의·신고·협의·처분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국토계획법」 제65조에서는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함(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  
 17)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하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2022.1.1. 법률 제17814호 시행 이후부터는 ‘도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은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봄  
 18)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인가 신청서에 ①위치도 및 사업구역이 표시된 실측 지형도, ②실시설계도서, ③자금조달계획서와 연차별 투자계획서, ④예정공정표, ⑤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함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국유재산법」 제7조, 「공유재산법」 제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공유지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위 6개 부서에서는 국·공유지를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관리기관의 의견대로 유상 매입 또는 무상귀속을 하거나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 등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등을 득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단, ▽▽▽▽▽▽과, ▲▲▲▲▲▲▲▲과, ◆◆◆◆과, □□□□□□과, ■■■■■과에서는 ◇~◇ ◆◆로 기반조성공사 등 총 131건의 도로공사 및 하천공사 등을 추진하면서

공사 구간 내 편입되는 토지 1,916필지 1,225,939㎡ 중 사유지 1,320필지 845,291㎡에 대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거나 토지 소유자 등과 보상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표 2] 공사 구간 내 편입토지 현황

구분	사업건수	편입토지 현황		사유지		국·공유지	
		필지 수	면적(㎡)	필지 수	면적(㎡)	필지 수	면적(㎡)
계	131	1,916	1,225,939	1,320	845,291	596	380,648
■■■■■단	4	97	185,850	81	163,468	16	22,382
▽▽▽▽▽과	9	84	219,676	71	182,727	13	36,949
▲▲▲▲▲과	9	56	16,411	47	11,558	9	4,853
◆◆◆◆과	68	1,067	490,669	793	261,303	274	229,366
□□□□□과	33	539	149,978	271	81,348	268	68,630
■■■■■과	8	73	163,355	57	144,887	16	18,468

※ 봉화군 제출자료 재구성

국·공유지 596필지 380,648㎡ 중 228필지 164,211㎡는 아래 [표 3]과 같이 유상 매입하거나 무상귀속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표 3] 공사 구간 내 편입 국·공유지 유상 매입 및 무상귀속 협의 완료 현황

구분	소계		기재부 소유		국토부 소유		농림부 소유		
	필지 수	면적(㎡)	필지 수	면적(㎡)	필지 수	면적(㎡)	필지 수	면적(㎡)	
계	228	164,211	17	1,430	46	33,680	15	16,397	
□□□□□□□□단	-	-	-	-	-	-	-	-	
▽▽▽▽▽▽과	8	19,577	2	246	4	6,641	-	-	
▲▲▲▲▲▲▲▲과	-	-	-	-	-	-	-	-	
◆◆◆◆과	60	89,674	-	-	37	25,458	9	14,838	
▣▣▣▣▣▣과	154	39,201	15	1,184	3	307	4	517	
▤▤▤▤▤▤과	6	15,759	-	-	2	1,274	2	1,042	
환경부 소유	교육청 소유		산림청 소유		경상북도 소유		기타		
필지 수	면적(㎡)	필지 수	면적(㎡)	필지 수	면적(㎡)	필지 수	면적(㎡)	필지 수	면적(㎡)
-	-	7	26,503	13	46,307	1	3,358	129	36,536
-	-	-	-	-	-	-	-	-	-
-	-	2	12,690	-	-	-	-	-	-
-	-	-	-	-	-	-	-	-	-
-	-	-	-	10	44,854	1	3,358	3	1,166
-	-	3	370	3	1,453	-	-	126	35,370
-	-	2	13,443	-	-	-	-	-	-

※ 봉화군 제출자료 재구성

잔여 국·공유지 368필지 216,437㎡는 아래 [표 4]와 같이 특별한 사유 없이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기관과 유상 매입 또는 무상귀속 절차를 협의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채 건설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2018년 8월부터 2022년 9월 감사일 현재까지 [붙임]과 같이 지속적으로 국·공유지를 무단 훼손하여 사용하고 있다.

[표 4] 공사 구간 내 편입 국·공유지 유상 매입 및 무상귀속 미협의 현황

구분	소계		기재부 소유		국토부 소유		농림부 소유		
	필지 수	면적(m <sup>2</sup> )	필지 수	면적(m <sup>2</sup> )	필지 수	면적(m <sup>2</sup> )	필지 수	면적(m <sup>2</sup> )	
계	368	216,437	9	834	196	116,095	117	85,861	
□□□□□□□□단	16	22,382	-	-	2	226	13	22,033	
▽▽▽▽▽▽과	5	17,372	1	502	2	9,785	1	6,285	
▲▲▲▲▲▲▲▲과	9	4,853	-	-	4	3,778	3	630	
◆◆◆◆과	214	139,692	3	127	121	80,159	68	48,723	
▣▣▣▣▣▣과	114	29,429	5	205	63	21,245	26	6,383	
▤▤▤▤▤▤과	10	2,709	-	-	4	902	6	1,807	
환경부 소유		교육청 소유		산림청 소유		경상북도 소유		기타	
필지 수	면적(m <sup>2</sup> )	필지 수	면적(m <sup>2</sup> )	필지 수	면적(m <sup>2</sup> )	필지 수	면적(m <sup>2</sup> )	필지 수	면적(m <sup>2</sup> )
-	-	3	1,578	2	1,196	35	9,129	4	821
1	123	-	-	-	-	-	-	-	-
1	800	-	-	-	-	-	-	-	-
-	-	-	-	-	-	2	445	-	-
-	-	2	1,349	2	1,196	16	7,599	2	539
-	-	1	229	-	-	17	1,085	2	282
-	-	-	-	-	-	-	-	-	-

※ 봉화군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봉화군수는

- ① 도로, 하천공사 등 건설공사 구간 내 편입되는 국·공유지 368필지 216,437m<sup>2</sup>를 관리기관과 유상 매입 또는 무상귀속 협의 없이 무단으로 훼손 사용한 봉화군에 대해서 「경상북도 자체감사 규칙」 제18조에 따라 **기관경고** 하며, (기관경고)
- ②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③ 또한 무단으로 훼손 사용한 국·공유지에 대하여는 관리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여 유상 매입 또는 무상귀속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붙임] 공사 구간 내 편입 국·공유지 미 협의 세부 현황

(단위 : 백만 원, 건, m<sup>2</sup>)

연번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국·공유지 편입 현황						비 고
				계		협의완료		미협의		
				필지 수	면적	필지 수	면적	필지 수	면적	
계			157,021	596	380,648	228	164,211	368	216,437	
1	◇-◇ ◆◆로기반조성사업	'21.03.~ '22.06.	1,158	7	1,102			7	1,102	■■■■ ■■단
2	●●●●●명소화사업									"
3	◇◇◇으로 만들어가는 마을학교조성사업	'21.01.~ '21.12.	17,351	5	16,540			5	16,540	"
4	◆◆◆◆◆ 주변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	'19.01.~ '24.12.		4	4,740			4	4,740	"
5	◆◆◆◆◆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	'21.04.~ '23.12.	9,390	1	12,245	1	12,245			▽▽▽▽ ▽▽과
6	◇◇◇◇◇ 관광명소화 사업	'20.01~ '24.06.	15,000	2	2,999	2	2,999			"
7	◇◇◇◇◇ 생태관광인프라구축사업	'22.01~ '23.12.	529	-	-					"
8	◇◇◇◇◇ 길정비사업	'21.12.~ '22.12.	115	1	567			1	567	"
9	☒☒☒진입로 확포장공사	'21.11.~ '22.04.	49	-	-					"
10	◆◆◆◆◆ 공용주차장조성사업	'21.03.~ '21.07.	422	1	445	1	445			"

연번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국·공유지 편입 현황						비 고
				계		협의완료		미협의		
				필지 수	면적	필지 수	면적	필지 수	면적	
11	◆◆역주차장조성사업			-	-					"
12	◇◇◇◇◇◇◇◇◇◇ 관광명소화연계사업			4	3,888	4	3,888			"
13	□□□□□□지구 부지매입	'20.01. ~ '22.12.	9,611	4	16,805			4	16,805	"
14	□□□□개체공사	'19.10. ~ '20.10.	1,500	5	4,202			5	4,202	▲▲▲▲▲▲ ▲▲과
15	◀◀◀농경지진입도로 확포장공사	'19.10. ~ '20.09.	245	-	-					"
16	▲▲▲농경지진입로확포장공사	'19.10. ~ '20.10.	278	-	-					"
17	▶▶▶농로정비공사	'20.03. ~ '20.07.	161	1	251			1	251	"
18	▼▼▼농로정비공사	'20.11. ~ '21.11.	221	-	-					"
19	☆☆☆도로개량공사	'21.04. ~ '21.06.	28	-	-					"
20	★★마을안길정비공사	'22.03. ~ '22.07.	108	-	-					"
21	○○농로확포장공사	'22.05. ~ '22.07.	108	2	25			2	25	"

연번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국·공유지 편입 현황						비 고
				계		협의완료		미협의		
				필지 수	면적	필지 수	면적	필지 수	면적	
22	●●농로정비공사	'22.07. ~ '22.09.	129	1	375			1	375	"
23	◎◎도로 확포장공사			4	2,187			4	2,187	◆◆◆◆과
24	◇◇~◆◆◆도로 확포장공사			7	1,702			7	1,702	"
25	□□도로 확포장공사	'19.05. ~ '20.05.	187	2	38,709	2	38,709			"
26	■■도로 확포장공사	'21.03. ~ '21.11.	579	10	3,573			10	3,573	"
27	△△도로 확포장공사	'20.06. ~ '20.12.	321	4	610			4	610	"
28	▲▲도로 확포장공사	'21.03. ~ '21.06.	264	3	282			3	282	"
29	▽▽▽도로 확포장공사	'20.05. ~ '20.11.	210	3	3,172			3	3,172	"
30	▼▼도로 확포장공사	'19.11. ~ '20.09.	253	3	1,986			3	1,986	"
31	◁▷도로 확포장공사			3	744			3	744	"
32	◀◀◀◀도로 확포장공사	'20.03. ~ '20.06.	94	-	-					"

연번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국·공유지 편입 현황						비 고
				계		협의완료		미협의		
				필지 수	면적	필지 수	면적	필지 수	면적	
33	▷▷도로 정비공사	'20.03. ~ '20.06.	151	5	1,275	3	1,006	2	269	"
34	▶▶▶도로 확포장공사	'19.03. ~ '19.09.	149	1	510			1	510	"
35	♠♠도로 확포장공사	'20.04. ~ '20.11.	148	5	296			5	296	"
36	♠♠♠도로 확포장공사			5	936			5	936	"
37	♡♡도로 확포장공사	'20.03. ~ '20.10.	401	5	2,218			5	2,218	"
38	♥♥♥♥도로 확포장공사	'20.03. ~ '20.07.	155	3	2,292			3	2,292	"
39	♣♣♣도로 확포장공사	'21.06. ~ '21.12.	684	5	2,571			5	2,571	"
40	♣♣♣♣도로 확포장공사	'20.10. ~ '20.12.	289	12	5,630			12	5,630	"
41	◎◎도로 확포장공사	'20.01. ~ '20.06.	1,362	2	418			2	418	"
42	◆◆도로 확포장공사	'20.03. ~ '20.09.	143	3	1,227			3	1,227	"
43	▣▣도로 사면보강공사	'19.04. ~ '19.05.	25	-	-					"

연번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국·공유지 편입 현황						비 고
				계		협의완료		미협의		
				필지 수	면적	필지 수	면적	필지 수	면적	
44	●●●도로 확포장공사	'21.03. ~ '21.08.	262	8	2,478			8	2,478	"
45	●●●3교 재가설공사	'20.03. ~ '20.12.	873	2	1,407	1	920	1	487	"
46	▤▤▤도로 선형개량공사	'20.03. ~ '20.12.	1,188	4	1,692	1	1,166	3	526	"
47	▤▤도로 선형개량공사			4	719			4	719	"
48	▤▤▤도로 확포장공사	'21.06. ~ '22.08.	435	2	1,555			2	1,555	"
49	▤▤도로 확포장공사	'22.07. ~ '23.07.	579	2	146			2	146	"
50	▤▤교(군도15호선) 교량개체공사			7	3,877			7	3,877	"
51	▤▤▤도로 확포장공사	'22.07. ~ '22.10.	171	1	510			1	510	"
52	●●도로 확포장공사	'20.03. ~ '20.10.	401	-	-					"
53	◇◇도로 확포장공사	'21.11. ~ '22.11.	651	3	773			3	773	"
54	◇◇입구도로 확포장공사	'21.03. ~ '21.06.	143	3	142			3	142	"

연번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국·공유지 편입 현황						비 고
				계		협의완료		미협의		
				필지 수	면적	필지 수	면적	필지 수	면적	
55	◆◆마을 관광인프라 활성화사업			-	2,473				2,473	"
56	◆◆교 개체공사	'18.11. ~ '20.04.	612	5	1,610			5	1,610	"
57	◆◆◆(리도202호선) 선형개량공사			4	822			4	822	"
58	◆◆◆도로 확포장공사(손실보상)	'19.04. ~ '19.12.	478	7	4,128	4	3,731	3	397	"
59	▣▣도로 확포장공사	'20.03. ~ '20.10.	401	5	2,218			5	2,218	"
60	◆◆도로 확포장공사	'19.03. ~ '19.09.	650	8	2,578			8	2,578	"
61	◆◆◆도로(농도310호) 선형개량공사			4	363			4	363	"
62	◆◆도로(군도18호)확포장공사			-	-					"
63	▣▣도로(면도103호)확포장공사			3	2,508			3	2,508	"
64	▣▣도로(군도6호)확포장공사			-	-					"
65	●●도로(리도214호)확포장공사			-	-					"
66	▣▣▣도로(농도308호선) 확포장공사			5	2,569			5	2,569	"
67	▣▣▣▣(군도4호선) 확포장공사			10	10,637			10	10,637	"

연번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국·공유지 편입 현황						비 고
				계		협의완료		미협의		
				필지 수	면적	필지 수	면적	필지 수	면적	
68	◇◇◇도로 확포장공사	'22.07. ~ '22.10.	171	-	-					"
69	◇◇도로(면도104호) 확포장공사			9	5,861			9	5,861	"
70	☆☆도로(리도202호) 확포장공사			5	481			5	481	"
71	★★★도로(군도8호)확포장공사			3	1,965			3	1,965	"
72	○○진입도로(면도106호) 확포장공사			4	2,882			4	2,882	"
73	●●소하천 정비사업	'19.10. ~ '23.01.	4,811	8	18,898			8	18,898	"
74	◎◎소하천 정비공사	'19.08. ~ '19.11.	137	-	-					"
75	◆◆◆소하천 정비공사	'19.08. ~ '19.11.	192	-	-					"
76	◇◇소하천 정비공사	'20.01. ~ '21.12.	91	-	-					"
77	□□□소하천 정비공사	'20.03. ~ '20.05.	102	-	-					"
78	■●소하천 정비공사	'20.04. ~ '20.08.	635	2	9,270			2	9,270	"
79	△△소하천 정비공사	'20.07. ~ '20.12.	275	4	3,066			4	3,066	"

연번	사 업 명	사업 기간	사업비	국·공유지 편입 현황						비 고
				계		협의완료		미협의		
				필지 수	면적	필지 수	면적	필지 수	면적	
80	▲▲소하천 정비공사	'20.08. ~ '20.12.	157	-	-					"
81	▽▽소하천 정비공사	'21.03. ~ '21.06.	110	-	-					"
82	▼▼소하천 정비사업	'21.03. ~ '24.06.	5,830	15	25,305			15	25,305	"
83	◎◎소하천 정비사업	'21.06. ~ '21.12.	126	-	-					"
84	◆◆소하천 정비공사	'21.12. ~ '22.08.	765	5	4,630	3	1,225	2	3,405	"
85	▣▣▣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19.11. ~ '23.05.	9,032	19	17,765	19	17,765			"
86	●●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0.06. ~ '21.12.	4,071	5	5,980	5	5,980			"
87	●●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21.07. ~ '24.03.	8,801	4	6,669	4	6,669			"
88	▤▤▤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22.06. ~ '24.12.	7,485	7	6,385	6	5,837	1	548	"
89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0.06. ~ '20.09.	793	11	6,086	11	6,086			"
90	▧▧▧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0.06. ~ '20.11.	389	1	580	1	580			"

연번	사 업 명	사업 기간	사업비	국·공유지 편입 현황						비 고
				계		협의완료		미협의		
				필지 수	면적	필지 수	면적	필지 수	면적	
91	봉화 ㉠㉠㉠㉠ 도시재생 뉴딜사업	'22.01. ~ '25.12.	14,160	15	483	15	483			㉠㉠㉠㉠과
92	봉화 ㉠㉠㉠㉠ 도시재생 인정사업	'20.12. ~ '23.12.	6,515	-	-					"
93	㉠㉠㉠㉠ ㉠㉠마을 조성사업	'20.04. ~ '23.12.	4,616	-	-					"
94	봉화㉠㉠ 앞 군계획도로(소★-★★) 개설공사	'19.11. ~ '20.06.	72	1	17	1	17			"
95	㉠㉠㉠ 옆 군계획도로(소★-★★) 선형개량공사	'19.04. ~ '20.05.	595	12	3,527	7	1,353	5	2,174	"
96	㉠㉠㉠ 주차장 설치공사	'20.03. ~ '20.06.	56	-	-					"
97	㉠㉠㉠㉠㉠ 경로당 진입로(소★-★) 정비공사	'20.03. ~ '20.12.	160	5	136	4	134	1	2	"
98	㉠㉠㉠ 주변 주차장 설치사업			-	-					"
99	㉠㉠㉠㉠㉠ 주변 주차장 설치공사	'19.11. ~ '20.05.	254	-	-					"
100	㉠㉠㉠㉠㉠ 도심활력사업	'18.08. ~ '20.12.	2,268	11	206	5	93	6	113	"
101	㉠㉠㉠㉠ 농업단지 연결도로 개설공사	'19.05. ~ '21.04.	1,402	35	14,953	22	9,455	13	5,498	"

연번	사 업 명	사업 기간	사업비	국·공유지 편입 현황						비 고
				계		협의완료		미협의		
				필지 수	면적	필지 수	면적	필지 수	면적	
102	▣▣도로 개설공사	'19.05. ~ '22.03.	1,983	9	3,860	2	967	7	2,893	"
103	▣▣▣소재지 주차장 설치공사	'19.04. ~ '19.09.	108	-	-					"
104	▣▣▣▣▣▣ 주차장 설치공사	'19.04. ~ '19.06.	62	-	-					"
105	▣▣▣▣▣▣▣▣▣ 인도설치공사	'19.04. ~ '19.12.	154	13	837	4	271	9	566	"
106	▣▣▣▣▣▣▣▣▣▣▣▣▣▣▣▣▣▣ 개설공사 외 3건									"
107	▣▣▣▣▣▣▣▣▣▣▣▣▣▣▣▣▣▣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20.03. ~ '20.08.	366	30	4,659	4	142	26	4,517	"
108	▣▣▣▣▣▣▣▣▣▣▣▣▣▣▣▣▣▣ 지구단위계획도로(소★-★) 개설공사	'20.05. ~ '20.09.	58	1	31			1	31	"
109	▣▣▣▣▣▣▣▣▣▣▣▣▣▣▣▣▣▣ 군계획도로(소★-★★) 선형개량공사	'20.06. ~ '20.12.	95	7	661	3	331	4	330	"
110	▣▣▣▣▣▣▣▣▣▣▣▣▣▣▣▣▣▣ 군계획도로(중★-★) 개설공사	'20.06. ~ '22.05.	1,248	49	12,614	10	398	39	12,216	"
111	▣▣▣▣▣▣▣▣▣▣▣▣▣▣▣▣▣▣ 아파트 옆 군계획도로(소★-★★) 개설공사	'19.04. ~ '20.07.	224	3	481	3	481			"
112	▣▣▣▣▣▣▣▣▣▣▣▣▣▣▣▣▣▣ 주변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20.06. ~ '21.08.	669	16	3,745	15	2,989	1	756	"

연번	사 업 명	사업 기간	사업비	국·공유지 편입 현황						비 고
				계		협의완료		미협의		
				필지 수	면적	필지 수	면적	필지 수	면적	
113	日日 군계획도로(중★-★) 개설공사	'20.04. ~ '20.12.	414	5	2,971	5	2,971			"
114	日日日日 군계획도로(소★-★★) 개설공사	'18.12. ~ '19.06.	137	4	403	3	113	1	290	"
115	□□□소재지 주차장 조성사업	'22.03. ~ '22.09.	329	-	-					"
116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2.04. ~ '22.11.	437	-	-					"
117	□□ 주차장 조성사업	'22.04. ~ '22.10.	391	18	2,786	8	2,786			"
118	□□□소재지 노상주차장 설치공사	'20.02. ~ '21.08.	1,104	-	-					"
119	▣▣▣▣ 연결도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	'22.07. ~ '23.01.	189	23	1,084	22	1,041	1	43	"
120	▣▣▣ 주변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사업									"
121	▣▣▣(▣▣▣▣타운, 주차장) 부지조성사업									"
122	봉화군○○○○(도로, 공공공지, 공공청사) 조성사업			11	15,176	11	15,176			"
123	○○○ 군계획도로(소★-★★) 보강공사	'22.07. ~ '22.10.	53	-	-					"

연번	사 업 명	사업 기간	사업비	국·공유지 편입 현황						비 고
				계		협의완료		미협의		
				필지 수	면적	필지 수	면적	필지 수	면적	
124	⊕⊕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	'20.06. ~ '21.04.	845	5	646			5	646	//// //과
125	△△△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	'20.06. ~ '21.04.	765	3	1,397			3	1,397	"
126	⊞⊞지구 발기반 정비사업	'21.03. ~ '21.08.	1,003	-	-					"
127	△△△지구 발기반정비사업	'21.03. ~ '21.08.	927	-	-					"
128	봉화테마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1	973	1	973			"
129	봉화테마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1	1,272	1	1,272			"
130	봉화테마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3	13,943	2	13,443	1	500	"
131	봉화테마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19.01. ~ '23.06.	2,728	3	237	2	71	1	166	"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 경관전망 인도교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봉화군  
 관 계 부 서 ■■■■■■단  
 내 용

봉화군 ■■■■■■단에서는 ○○○ 경관전망 인도교 조성사업을 [표 1]과 같이 (주)■■■■■■■■■■■■■■■■■■■■ 외 1개 도급자와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주)외 1개 도급자와 시설공사 계약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주)■■■■■■■■■■■■■■■■■■■■ 외 1개 도급자와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 중에 있다.

[표 1] 용역·공사 현황

용역 및 공사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 원)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계	도급	관급				
○○○ 경관전망 인도교 조성사업	경관타워 H=66.2m 인도교 L=116m(B=10m)	7,521	6,621	900	2021.05.12	2021.05.20. ~2023.04.14	■■■■■■■■(주) 외 1	
○○○ 경관전망 인도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식	237	237	-	2019.10.21	2019.11.06. ~2020.12.31	(주)■■■■■■■■■■■■■■■■■■■■ 외 1	
○○○ 경관전망 인도교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608	608	-	2021.09.03	2021.09.08. ~2023.05.12	(주)■■■■■■■■■■■■■■■■■■■■ 외 1	

### 1. 적정 공사기간 산정 부적정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19)」 제4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설계자로 하여금 이 기준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발주청에 설계 성과품의 일부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발주청은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공사기간과 그 산출근거를 입찰서류인 현장설명서(현장 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

19) 2019.3.1.시행, 국토부 훈령으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2021.9.17.시행, 국토부 고시)」 시행으로 폐지

는 입찰서류에 명시된 공사기간 및 산출근거를 검토하여 입찰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봉화군 ■■■■■■■■단에서는 ●●● 경관전망 인도교 조성사업의 설계자가 설계서를 제출했을 때 공사기간에 대한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설계사인 (주)■■■■■■■■■■으로부터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제출하게 하지 않았으며, 근거없이 제시한 공사기간(14개월<sup>20</sup>)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았다. 그 결과 공사기간과 산출근거를 현장설명(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 입찰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적정 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었다.

**[표 2]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의해 산출한 공사기간**

공사기간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비고
527일(약18개월)	70일 + 261일 + 166일 + 30일	

※ 봉화군 제출자료 재구성

## 2. 관련규정 검토 미흡으로 계약기간 연장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918호, 2019. 7. 1.)」 제75조의2에 따르면 발주청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한국시설안전공단(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11호 시행 이후부터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봉화군 ■■■■■■■■단은 실시설계를 할 때에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하는 것이 타당하다.

20) 적정 공사기간 18개월([표 2] 참조)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하여야 할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 여부를 알지 못한 채 사업을 시행한 이후 건설사업관리자의 관련 규정 검토 시 문제점을 뒤늦게 파악하고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게 되어 187일(2021. 10. 8. ~ 2022. 4. 12.)의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3. 부당한 사유의 공사 일시정지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지상높이가 31m 이상 건축물이 포함된 공사에 대하여는 착공 15일 전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재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안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0.5/1000)을 계약금액(장기 계속공사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봉화군 ■■■■■단은 시공사로부터 공사 정지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2021. 5. 20. 공사 착공계 접수 후 시공사인 ■■■■■(주)로부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공사로 심사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이를 공사 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장마철 태풍대비 사

업장 안전관리' 사유로 처리하여 공사기간을 정지(2021. 7. 7. ~ 2021. 9. 24. 80일, 1차) 하였으며, 그 이후 2차로 2022. 7. 29. ~ 감사일 현재(2차)<sup>21)</sup>까지 '장마철 태풍대비 사업장 안전관리'를 사유로 공사를 정지 중에 있다.

이로 인해 총 144일<sup>22)</sup>의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476,737천 원 정도(6,621,361천 원×0.5/1000×144일)의 지연배상금을 면제해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4.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물가 변동으로 인한 비용 발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봉화군 ■■■■■■단은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중인 (주)■■■■■■■■■■로부터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서를 받고(1차 2021. 12. 7. 177,482천 원, 2차 2022. 3. 22. 178,154천 원) 승인(2022. 4. 22.)하였으며, 3차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서를 접수(2022. 8. 17. 194,745천 원)한 상태이다.

공사기간 중 물가 변동 요인이 발생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타당한 절차이나 당초 계획한 공사기간(14개월) 내에 공사를 완료하였다면 현재까지 승인하거나 신청된 금액(총 3회 550,381천 원)에 대하여만 계약금액을 조정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공정률은 5%정도로 앞에서 확인된 사항(2. 관련규정 검토 미흡으로 계약기간 연장, 3. 부당한 사유의 공사 일시정지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연장된 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계약금액 조정 신청에 대한 비용 또한 봉화군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당초 계획한 공사기간(14개월) 대로 공사를 완료하였다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결과로

21) 감사종료일 2022.9.30. 기준 64일

22) 1차 80일 + 2차 64일(감사종료일 기준)

지방재정에 손실을 줄 우려가 있다.

## 5.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원인 제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계변경,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소송이 빈번하며 발주기관의 원인 제공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인 경우에는 간접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결과로 도출<sup>23)</sup> 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며, 추후 시공사에서 간접비를 청구할 경우 합의에 의해 지급하거나 소송에 의한 법원 판결에 따라야 한다.

설계의 안전성 검토 기간 소요(187일, 2021. 10. 8. ~ 2022. 4. 12.) 및 ‘장마철 태풍대비 사업장 안전관리’를 사유로 한 공사정지 기간(144일, 1차 2021. 7. 7. ~ 9. 24, 2차 2022. 7. 29. ~ 현재)<sup>24)</sup>으로 연장된 공사기간 총 331일(감사일 현재 까지)에 대하여는 131백만 원<sup>25)</sup> 정도의 간접비가 청구될 우려가 있다.

## 6. 현장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임의 변경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

2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4다 235189)

24) 감사종료일 2022.9.30. 기준 64일

25) ▣▣▣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봉화군 ◆◆◆◆과)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조정(2020.6.12.)을 참고하여 계약금액 비례로 산정한 금액임(11,951천원 / 월)

에게 건설기술인을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2절 및 제5절에 따르면 착공·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는 계약문서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 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봉화군 ■■■■■■단에서는 신고된 현장대리인의 현장 상주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대리인 변경 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를 변경하여 제출받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2021. 5. 20. 현장대리인 ‘AAA’으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은 후 현장대리인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았음에도 묵인하고 있다가 현장대리인 변경 요구 공문 없이 현장대리인을 ‘BBB’으로 변경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 제출된 착공신고서(혁신전략사업단 및 재정과<sup>26)</sup>)의 첨부서류를 교체하여 현장대리인이 ‘BBB’으로 착공신고된 것처럼 처리한 사실이 있다.

## 7. 실시설계 부실로 인한 사업비 증액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 10조에 따르면 설계자는 관련법령, 설계기준, 설계도서 작성기준 및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및 [별표8]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2021. 6. 17. 법률 제17939호 시행 이전에는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sup>27)</sup>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별점

26) ■■■■■■단 담당자 CCC가 2021. 7월경 계약담당자 ○○과 DDD에게 요청하여 ○○과 서류 교체

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봉화군 ■■■■■■단은 실시설계에 대해 부실 여부를 검토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벌점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토질조사 결과 도면 적용 오류 등의 실시설계 부실로 인한 인도교 기초 공법 변경<sup>28)</sup>(사업비 증액 10,300천 원), 가도폭 변경<sup>29)</sup>(사업비 증액 76,100천 원), 교각 기초 가시설 변경<sup>30)</sup>(사업비 증액 133,000천 원)이 필요하다는 실정보고를 2022. 4. 6. 받고, 사업비 증액에 대한 관련 규정에 따른 책임규명 없이 위 사항의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2022. 4. 8. 실정보고 승인한 사실이 있다.

## 8. 부당한 실정보고 승인으로 사업비 증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는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 검토,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설계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및 [별표8]에 따르면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

27) 토질·기초조사의 잘못(벌점1),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벌점 3~1점)

28) 토질조사 결과의 도면적용 오류로 교각 및 교대 기초공법이 변경 됨

29) 타워크레인으로 전망타워 설치를 설계하였으나 구조검토 결과 하이드로 크레인으로 적용하여야 함에 따른 가도폭 변경(9m→20m)

30) 교각 기초 설치를 위한 터파기를 오픈컷 공법으로 설계하였으나 하천수의 유입이 많아 시트파일 공법으로 변경

니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봉화군 ■■■■■■■■단은 실정보고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의 벌점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설계사인 (주)■■■■■■■■■■이 ‘국도건설공사 설계 실무요령(국토부)’에 따라 인도교 슬라브에 소요되는 거푸집을 합판으로 설계하였음에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중인 (주)■■■■■■■■■■로부터 구조검토 등으로 설계가 안전하지 않다는 사유가 아니라 단순히 강재거푸집이 미관 및 안전성이 뛰어나다는 사유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실정보고를 2022. 4. 6. 받아 2022. 4. 8. 승인(사업비 증액 209,000천 원)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봉화군수는**

-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기술인에 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시정)
- ②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 공영주차타워 사후관리 부적정  
소 관 청 봉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1. 시설물 하자관리 부적정

봉화군 ▲▲▲▲▲▲▲▲▲▲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 공영주차타워 건립공사’를 2020. 3. 2. ▣▣▣▣건설(주)와 계약하고 2020. 12. 10. 준공하였으며, 현재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 1] 시설공사 현황

사업명	사업내용	공사기간	사업비(백만 원)			도급자	비고
			계	도급액	관급액		
○○○○○ 공영주차타워 건립공사	주차타워 1,492.09㎡	2020.3.9.~ 2020.12.10.	2,601	2,348	253	▣▣▣▣건설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계약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제10절에 따르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자검사에 입회해야 하며 계약상대자

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10절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하자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하자발생 내용 및 처리사항을 기록·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봉화군 ▲▲▲▲▲▲▲▲▲▲과에서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시설공사 등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가 발생된 경우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하자의 발생원인과 조치계획을 제출받고 하자보수를 시행한 후 하자발생 내용 및 처리사항을 기록한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2020. 12. 10. 준공된 ‘○○○○○○ 공영주차타워’를 관리하면서 2021. 8. 4. ○○과로부터 2021년도 상반기 하자검사 실시 및 결과 제출의 공문을 접수하여 하자검사를 위임받았음에도 준공 이후 감사일 현

재까지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감사기간 중(2022. 9. 22.) 누수, 바닥 물고임 및 철골부재 부식 등이 확인되었으나 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는 등 하자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진입로 천정 누수, 배수불량 및 옥상 바닥에 물고임 등 하자가 발생되자 2021. 6. 10. 계약상대자인 〰〰〰〰건설주식회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발생원인과 조치계획을 제출받지 못했고, 감사일 현재까지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하자보수관리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하자보수를 부적정하게 시행한 사실이 있다.

## 2. 〇〇〇〇〇〇〇 공영주차타워 안전시설물 보완공사 추진 부적정

봉화군 ▲▲▲▲▲▲▲▲▲과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〇〇〇〇〇〇〇 공영주차타워 안전시설물 보완공사’를 2021. 3. 15. ■■건축과 계약하고 2021. 3. 29. 준공하였다.

[표 2] 시설공사 현황

사업명	사업내용	공사기간	계약금액(천 원)	도급자	비고
〇〇〇〇〇 공영주차타워 안전시설물 보완공사	안전시설물 설치 등	2021.3.15.~ 2021.3.31.	16,526	■■건축	

### 가. 전문건설업 미등록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에 따르면 공사예정금액이 1천 5백만 원 이상인 전문건설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 5백만 원 이상인 전문건설공사의 수의계약은 해당 전문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위 [표 2]와 같이 ‘○○○○○○○ 공영주차타워 안전시설물 보완공사’를 ‘■ ■ 건축’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면서 해당 업체의 전문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여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있다.

#### 나. 증축신고 대상 지붕설치 착공 전 건축협의 미이행

「건축법」 제2조, 제11조 및 제29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증축신고 대상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착공 전 허가권자와 협의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위 [표 2]와 같이 ‘○○○○○○○○ 공영주차타워 안

전시설물 보완공사'를 추진하면서 지붕의 설치로 바닥면적이 증가되어 증축신고 대상에 해당되나 착공 전 미리 건축허가 부서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추진하여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불법건축물이 건축되도록 한 사실이 있다.

#### 다. 시설물 하자보수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10절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하자발생 내용 및 처리사항을 기록·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하자가 발생된 경우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하자의 발생원인과 조치계획을 제출받고 하자보수를 시행한 후 하자발생 내용 및 처리사항을 기록한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 공영주차타워' 진입로 트렌치로 배수가 원활히 되지 않고, 1층 후면에서 주차장 내부로 우수가 유입되는 하자가 발생되었는데도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요청을 하지 않고 위 [표 2]의 '○○○○○○ 공영주차타워 안전시설물 보완공사'에 발

생한 하자를 보수하는 배수드레인 보수 및 측구수로관 설치를 포함한 공사를 시행하여 총 9,958천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봉화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건축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증축 시설물에 대하여 「건축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봉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봉화군 ◆◆◆◆과에서는 ‘소하천 정비공사’ 외 1건을 아래 [표]와 같이 추진 중에 있다.

[표] 공사현황

(단위 : 백만 원)

공 사 명	사업내용	총공사비			사업기간	시공사 (대표자)	비고 (공정률)
		계	도급	관급			
소하천 정비공사	소하천 정비 L=0.89km, 교량 2개소	4,487	3,246	1,241	2019. 10. 25. ~ 2023. 1. 1.	토건(주) (EEE)	70%
소하천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 L=2.4km, 교량 16개소	5,387	3,825	1,562	2021. 3. 31. ~ 2024. 6. 7.	건설(주) (FFF)	40%

### 1. 건설공사 안전관리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01조의2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등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르면 발주청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한국시설안전공단(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11호 시행 이후부터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를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sup>31)</sup>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봉화군 ◆◆◆◆과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상대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관리를 이행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등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임에도 ‘▣▣▣▣ 소하천 정비공사’의 경우 안전점검 없이 공사를 추진하였고, ‘▣▣ 소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설계안전성 미검토,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안전점검 미이행 등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2. 공사비 과다 계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장여건 등을

31)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32호, 2018. 8. 27.)」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계상 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봉화군 ◆◆◆◆과에서는 ‘○○○○소하천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제방 비탈면 보호공을 거적덮기와 종자살포(2,690원/m<sup>2</sup>)로 시공하면 더욱 경제적임에도 고가의 줄떼(4,521원/m<sup>2</sup>)를 설계에 반영하여 8,782천 원을 과다 계상하였고, ○○○○교 보도용 가교를 교량 시공이 끝날 때까지 미시공하였음에도 42,941천 원을 감액하지 않았으며, 가시설(화타빼기)을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25,083천 원을 감액하지 않았다.

또한 ‘□□ 소하천 정비사업’를 추진하면서 절곡이 불필요한 장철근을 가공 물량으로 설계에 반영하여 6,820천 원을 과다 계상하였고, 호안 기초 거푸집이 합판(6회)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저렴한 유로폼으로 시공하였음에도 7,523천 원을 감액하지 않았으며, 실제 공사 과정에서 강관비계다리를 미설치하고 불필요함에도 설계에 반영하여 79,702천 원을 과다 계상하였다.

한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266호, 2019. 1. 11.)」 ‘차량방호 안전시설 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교량에 설치된 교명주는 차도 쪽으로 돌출된 구조로서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교량에 접근하면서 도로의 폭이 좁아지는 경우에는 더욱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근본적으로는 차량 충돌에 의한 사고 피해의 우려가 높은 교명주는 설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교량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국토교통부, 2016. 8.)」에 따르면 교명주는 “장대교 및 특수 교량과 같이 조형미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소교량은 중분대 미설치 시 교명판 1개, 설명판 1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소하천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교량 2개소에 교명주 8개를 설치하여 10,741천 원을 낭비하였고, ‘□□ 소하천 정비사업’를 추진하면서 교량 4개소에 교명주 16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하여 24,395천 원을 과다 계상하였다.

그 결과 과다 설계, 설계와 다른 시공 등으로 공사비 195,246천 원(제경비 포함)이 과다하게 반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3. 공사감독 업무 소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87호, 2020. 12. 16.)」 제4조, 제138조 및 제142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및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작업단계별 시공상태의 확인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재시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및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공사 목적물이 적정하게 시공되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시공하는 경우 재시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감사일 현재 현장확인 결과 봉화군 ◆◆◆◆과에서는 ‘□□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호안 기초 터파기 시 지반고 아래에 있는 암을 절취하여 기초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시공자가 도면과 다르게 노출된 암 위에 기초를 시공하게 하여, 기초 하단이 세굴되고 호안이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재시공<sup>32)</sup> 비용 약 45,500천 원이 발생되게 하였다.

32) NO.10~NO.14(L=160m, 양안), 재시공 비용 45,500천 원 정도 소요(추정)

### 조치할 사항 봉화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등 안전관리 소홀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과다 계상된 사업비 195,246천 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④ 기초 하단이 세굴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구간은 재시공하시기 바라며, 건설사업자에 대해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등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봉화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봉화군 ㉠㉠㉠과에서는 2022. 1. 27. (주)㉠㉠건설과 계약하여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아래 [표]와 같이 추진 중에 있다.

[표] 공사현황

(단위 : 백만 원)

공 사 명	사업내용	총공사비			사업기간	시공사 (대표자)	비고 (공정률)
		계	도급	관급			
★★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상수관로 L=11.127km	3,449	1,964	1,485	2022. 2. 7. ~ 2024. 2. 6.	(주)㉠㉠건설 (GGG)	30%

### 1. 건설공사 품질관리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에 대하여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으며,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이 건설공사의 경우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로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와 20㎡ 이상의 시험실 규모를 갖추고, 초급기술인 이상인 건설기술인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봉화군 ㉠㉠㉠㉠과에서는 ‘★★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임에도 불구하고 품질시험계획을 미승인하고, 품질시험실을 규정(20㎡ 이상) 보다 작게(18㎡) 설치하는 등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2. 건설공사 안전관리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01조의2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등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르면 발주청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를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sup>33)</sup>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봉화군 ㉠㉠㉠㉠과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상대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관리를 이행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33)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87호, 2021. 9. 17.)」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등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설계안전성 미검토,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안전점검 미이행 등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3.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 비율 부적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건설업자에게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게 하도록 되어 있으며,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려면 설계 등 용역업자, 건설업자 및 감리자의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아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7-175호, 2017. 9. 27.)」에 따르면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에서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200미터 이상 또는 포장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순환골재와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을 제품 소요량의 40% 이상 의무사용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봉화군 ㉠㉠㉠과에서는 ‘★★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어촌도로에 2천 제곱미터 이상<sup>34)</sup>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순환골재와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각각 소요량의 40% 이상 사용하여야 함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을 하지 않은 채 순환골재(보조기층)와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아스팔트콘크리트)을 사용하지 않아 26,799천 원(제경비 포함)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하였다.

34) 절삭 후 덧씌우기 물량 A=27,302m<sup>2</sup>

#### 4. 공사비 과다계상 등 공사감독 업무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계상 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봉화군 ㉠㉠㉠㉠과에서는 ‘★★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로 매설에 따른 도로 절단 폭이 설계와 상이한데도 정산하지 않아 159,500천 원(제경비 포함)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하였고, 일부 구간(G라인)에 투입된 장비가 설계와 상이하여 3,148천 원(제경비 포함)이 과다하게 반영되었는데도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과다 설계, 설계와 다른 시공 등으로 공사비 162,648천 원(제경비 포함)이 과다하게 반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봉화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품질시험계획 미승인 등 품질관리 소홀사항과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등 안전관리 소홀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과다 계상된 사업비 162,648천 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